大統領選擧法中改正法律案

議案番號	

提案年月日 : 1992. 11. .

提 案 者 :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長

1. 提案經緯

가. 第158回 國會(臨時會) 第5次 本會議(1992.8.12)의 議決로 構成된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가 大統領選擧法改正에 관하여 約 110個의 合意事項과 9個의 未合意事項의 審議結果를 第159回 國會(定期會) 第1次 本會議(1992.9.14)에서 報告한 바 있음.

나. 第159回 國會(定期會) 第2次 本會議(1992.10.2)의 議決로 再構成된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 第2次 會議(1992.10.12)에서 法案審議班을 構成하고 大統領選擧法의 改正審議를 委任함.

다. 1992年 10月 31日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 第3次會議에서 法案審議班으로부터 大統領選擧法에 대한 審議結果를 報告받고 同審議班에서 成案한 大統領選擧法中改正法律案을 審査한 바 이를 委員會案으로 採擇하기로 議決함.

2. 提案理由

大統領選擧의 重要性을 감안하여 候補者·政黨 및 國民이 보다 公明正大하게 選擧를 치를 수 있고 選擧管理機關으로 하여금 選擧管理에 萬全을 期하도록 하고자, 選擧運動은 政見·政策의 對決이 되도록 그 方法을 改善하고 不在者投票의 管理를 더욱 強化하며 그밖에 公明選擧를 保障하기 위한 여러가지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는 등 現行法 가운데 지금까지의 各種選擧에서 나타난 問題點을 改善·補完하려는 것임.

3. 主要骨子

가. 選擧權과 被選擧權의 缺格事由중 選擧犯의 罰金刑量을 현행 5萬원에서 100萬원으로 인상함(案 第11條第3號, 第12條第3號).

나. 選擧人名簿作成의 公正性을 높이기 위하여 名簿作成時에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외에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도 이를 監督하도록 하고 각 候補者側에서 1人씩 지명한 立會人이 立會하도록 함(案 第18條).

다. 區·市·邑·面의 長의 錯誤등의 事由로 인하여 정당한 選擧權者가 選擧人名簿에서 漏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選擧人名簿에 대한 異議申請期間이 경과하였더라도 選擧人名簿가 확정될 때까지는 당해 選擧

權者 또는 區·市·邑·面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이를 救濟할 수 있도록 함(案 第21條의 2).

라. 候補者의 寄託金을 政黨推薦候補者는 5千萬원, 無所屬候補者는 1億원으로 하던 것을 均等하게 3億원으로 하고, 選擧人名簿 寫本交付費用과 不法宣傳物등에 대한 代執行費用을 寄託金에서 控除하도록 함(案 第26條).

마. 候補者의 配偶者등 家族은 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하지 않더라도 選擧運動을 할 수 있도록 함(案 第36條第1項).

바. 鄕土豫備軍의 小隊長級 이상의 幹部와 統·里·班의 長이 選擧運動員등이 되기 위하여는 大統領任期滿了日 100日이전에 그 職에서 解任되도록 하고 選擧日후 6月이내에는 從前의 職에 復職할 수 없도록 함(案 第36條第3項·第4項).

사. 放送施設을 이용한 演說費用중 國庫負擔回數가 텔레비전과 라디오 각각 候補者演說 1回·演說員演說 1回이던 것을 候補者演說 3回·演說員演說 2回로 하여 選擧公營制를 擴大함(案 第43條第8項).

아. 放送施設을 이용한 對談·討論時間을 40分이내에서 2時間이내로 延長함(案 第44條第3項).

자. 政黨 또는 候補者는 選擧運動期間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별로 各 5回이내에서 廣告를 할 수 있도록 함(案 第45條의 2).

차. 演說會場에서는 錄音器·錄畵器 使用行爲, 候補者를 支持·宣傳하는 내용의 노래를 하는 行爲, 標識板·어깨띠·手旗를 着用·휴대하는 行爲, 연달아 소리지르는 行爲 및 停止된 自動車위에서의 演說行爲를 할 수 있도록 許容함(案 第47條第9項 및 第10項, 第50條第1項, 第67條, 第74條).

카. 演說會의 回數를 候補者演說會는 市·道別 3回이내, 演說員演說會는 邑·面·洞마다 1回이내로 開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候補者演說會와 演說員演說會를 합하여 開票區마다 5回 開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한 2이상의 開票區의 演說會를 한 場所에서 共同開催할 수 있도록 함(案 第47條).

타. 政黨 또는 候補者는 政黨과 候補者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政見·政策集 1種과 小型印刷物 4種(傳單型 1種과 冊子型 3種)을 각각 製作하여 配付할 수 있도록 함(案 第50條의 2, 第50條의 3).

파. 公務員, 政府 및 地方自治團體의 投資機關의 任·職員, 統·里·班의 長과 鄕土豫備軍의 小隊長級 이상 幹部, 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國民運動團體로서 政府의 出捐·補助를 받는 團體의 常勤 任·職員과 이들 團體의 中央會長은 특정 政黨 또는 候補者의 업적을 弘報하거나 選擧運動의 企劃에 참여하는등 選擧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案 第62條).

하.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는 冠婚喪祭儀式이 거행되는 場所나 道路·市場등 多數人이 왕래하는 公開된 場所에서 政黨 또는 候補者에 대한 支持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案 第63條第2項).

거.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는 허용하되, 選擧期間중에는 그 經緯와 結果를 公表하지 못하도록 함(案 第65條).

너. 寄附行爲制限規定을 強化하여, 寄附行爲制限의 主體와 客體를 擴大하고 政黨과 候補者의 경우는 選擧運動期間중 당해 選擧에 관한 여부를 不問하고 일체의 寄附行爲를 禁止하도록 하였으며, 制限되는 寄附行爲의 類型에 入黨願書와 交換한 金品제공, 演說會 參席條件의 金品제공, 觀光便宜의 제공, 花環·달력제공, 宗敎·社會團體등에의 金品제공등의 行爲를 추가함(案 第70條).

더. 有給選擧運動員制度를 自願奉仕選擧運動員制度로 전환하기 위하여 選擧運動關係者에게는 手當을 支給하지 아니하고 實費補償만 하도록 함

(案 第92條).

러. 選擧日公告는 選擧日前 30日에 하도록 하던 것을 選擧日前 28日에 하도록 하여 選擧運動期間을 30日에서 28日로 2日 短縮함(案 第93條 第1項).

머. 不在者投票制度의 改善策으로서, 不在者申告人의 대상을 擴大하고, 原則的으로 不在者申告人은 選擧管理委員會가 設置한 不在者投票所에서 不在者投票管理委員會의 管理와 政黨推薦參觀人의 參觀下에 投票를 행한 후 이를 郵遞局長에게 引繼하여 郵便發送하도록 하며, 不在者投票期間(10日)중 特別한 事由로 계속하여 選擧管理委員會가 設置한 不在者投票所에 갈 수 없는 不在者申告人은 所屬機關·施設의 長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그 機關·施設內에 設置한 不在者投票所에서 不在者投票管理委員會의 管理와 政黨推薦參觀人의 參觀下에 投票가 행해지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擧動이 不可能한 者나 隔·奧地등에서 勤務하는 軍人등 不在者投票所에 갈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居所에서 記票하도록 함으로써 不在者投票의 公正性을 提高함. 그리고 郵送중의 事故를 방지하기 위하여 回送用外封套의 封緘部分에 不在者投票管理委員會가 確認印을 捺印하거나 居所投票人이 署名 또는

私印을 捺印하도록 함(案 第17條第2項, 第95條의 2, 第95條의 3, 第103條第2項 내지 第4項).

버. 候補者가 推薦한 開票參觀人의 手當등을 候補者負擔에서 國庫負擔으로 변경함 (案 第119條第12項).

서. 候補者別 得票數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發表하기 전에는 누구든지 이를 報道할 수 없도록 함(案 第118條第5項).

어. 選擧訴訟의 處理期間을 現行 1年이내에서 180日이내로 短縮함(案 第137條).

저. 政黨이나 候補者등에 대하여 金品등을 要求·斡旋한 者등에 대한 罰則을 強化하며, 기타 公明選擧를 確保하기 위하여 選擧事犯에 대한 罰則을 全般的으로 強化함(案 第12章).

처. 買收 및 利害誘導罪등을 범한 者중 金品등을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約束받은 選擧人이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免除하도록 함(案 第167條의 2).

커. 選擧犯의 公訴時效期間을 選擧日후 3月에서 6月로(犯人逃避時는 1年에서 3年으로) 延長함(案 第170條).

터. 選擧事犯의 裁判期間을 第1審은 6月이내, 第2審 및 第3審은 각각

前審宣告후 3月이내에 하도록 規定하여 1年이내에 裁判이 終結되도록 함(案 第171條의 2).

되. 選擧管理委員會는 違法宣傳物을 發見하였을 때에 中止·撤去·收去·閉鎖등을 命令할 수 있고, 이에 不應하는 경우에는 行政代執行法에 의하여 代執行을 할 수 있도록 함(案 第171條의 3).

法律 第　　號

大統領選擧法中改正法律案

大統領選擧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條의 2(言論機關의 公正報道 義務) 放送·新聞·雜誌 기타의 刊行物을 경영·編輯·取材·執筆·報道하는 者가 選擧에 관하여 報道·論評을 하는 때에는 表現의 自由를 濫用하여 選擧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1條第3號 및 第12條第3號중 "5萬원"을 "100萬원"으로 한다.

第17條第1項 및 第2項 本文중 "選擧日公告日로부터 7日이내에"를 각각 "選擧日公告日부터 5日이내에"로 하고, 同條第2項第1號중 "登載된 投票區밖에 長期旅行하는 者"를 "登載되고 選擧人名簿作成滿了日 이전부터 住民登錄地인 區·市·郡 밖으로 떠난 者로서 選擧日까지 住民登錄地로 歸還할 수 없는 者"로 하며, 同條同項第2號중 "軍人"을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 하고, 同條同項에 第4號 및 第5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身體에 중대한 障碍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者

5.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기타 選擧日에 選擧事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者

第17條第8項중 "2千人"을 "1千人"으로, "2個로"를 "選擧人數 1千人을 單位로 하여"로 하여 이를 第9項으로 하고, 同條 第4項 내지 第7項을 第5項 내지 第8項으로 하며, 同條 第3項을 第4項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3項 및 第10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不在者申告書에 不在者投票事由(居所에서 投票하고자 하는 者는 居所投票事由를 말한다)·姓名·住所·居所·性別·生年月日을 기재하고, 第2項第2號·第3號 및 第5號에 해당하는 者는 所屬機關 또는 施設의 長의 확인을 받아 申告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居所에서 投票할 수 있는 者는 第2項第2號에 規定된 者중 不在者投票所에 가서 投票할 수 없는 隔奧地 또는 艦艇에 勤務하는 者로서 그 所屬機關의 長이 不在者申告書에 居所에서 投票할 者임을 확인한 者와 第2項第4號에 規定된 者(이하 "居所投票者"라 한다)에 한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때에는 區·市·邑·面의 長은

不在者申告書의 申告事項을 확인한 후 정당한 不在者申告인 때에는 選擧人名簿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不在者申告人名簿를 따로 작성하여야 하되, 不在者申告人이 居所投票者인 때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⑩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人名簿와 不在者申告人名簿의 작성은 電算組織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性別 및 生年月日의 기재는 住民登錄番號의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第18條의 題目중 "監督"을 "監督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를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및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로 하며, 同條第4項중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를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로 하고, 同條에 第6項 내지 第9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⑥區·市·邑·面의 長이 選擧人名簿를 작성하는 때에는 大統領候補者(이하 "候補者"라 한다) 또는 選擧事務長이나 選擧連絡所長이 選擧權者 중에서 지명하는 者(이하 "選擧人名簿作成立會人"이라 한다)를 邑·面·洞마다 各 1人씩 立會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選擧人名簿作成立會人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區·市·邑·面의 長은 選擧人名簿作成立會人이 選擧人名簿作成에 관하여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是正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是正하여야 한다.

⑧選擧人名簿作成立會人은 選擧人名簿作成事務를 방해하거나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에 대한 支持 또는 反對를 勸誘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選擧人名簿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選擧人名簿作成立會人임을 표시하는 標識 이외에는 腕章·胸章 기타 選擧에 관한 어떠한 標識도 附着·着用 또는 휴대할 수 없다.

⑨選擧人名簿作成立會人의 申告期間·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第1項중 "다음날로부터 5日間"을 "다음날부터 3日間"으로, "里·洞別"은 "里別"로, "統·里·洞의 長"을 "統·里의 長"으로 한다.

第21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1條의 2(名簿漏落者의 구제) ①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期間 경과후 選擧人名簿確定日前日까지 區·市·邑·面의 長의 착오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選擧權者가 選擧人名簿에 漏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選擧權者 또는 區·市·邑·面의 長은 住民登錄票謄本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選擧人名簿登載申請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그 申請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審査·決定하되, 그 申請이 이유있다고 決定한 때에는 즉시 관계 區·市·邑·面의 長에게 통지하여 選擧人名簿를 修正하게 하고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申請人과 관계 區·市·邑·面의 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22條第1項중 "退去申告"를 "轉出申告"로 하고, 同條 第1項 및 第3項중 "選擧人名簿確定日" 다음에 "前日"을 삽입한다.

第24條第1項 但書중 "第17條第7項"을 "第17條第8項"으로 한다.

第25條第1項중 "選擧連絡所責任者"를 "選擧連絡所長"으로, "확정된 選擧人名簿(不在者申告人名簿를 포함한다) 寫本 1通을 選擧人名簿確定후"를 "작성된 選擧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 1通을 그 名簿가 작성된 후"로 하고, 同條 第2項 및 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人名簿 및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의 交

付申請은 選擧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 작성마감일의 前日까지 당해 區·市·邑·面의 長에게 하여야 한다.

③區·市·邑·面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人名簿 및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을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내용과 作成費用을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통보하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그 費用을 區·市·邑·面의 長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選擧人名簿 및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의 交付申請과 費用納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6條第1項중 "大統領候補者(이하 "候補者"라 한다)의 登錄은 選擧日公告日로부터 7日이내에"를 "候補者의 登錄은 選擧日公告日부터 5日이내에"로 하고, 同條後段중 "承諾書를 첨부하고 5千萬원을 寄託하여야 하며,"를 "承諾書를,"로, "選擧日公告日로부터 記名·捺印"을 "記名·捺印"으로, "첨부하고 1億원을"을 "첨부하고, 候補者마다 3億원을"로 한다.

第26條第8項중 "推薦狀의 書式과 寄託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를 "推薦狀의 書式·檢印 및 교부와 寄託金의 寄託·반환 및 國庫歸屬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로 하여 이를 第10項으로 하고, 同條 第2項 내지 第7項을 第3項 내지 第8項으로 하

며, 同條 第7項(從前의 第6項) 및 第8項(從前의 第7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2項 및 第9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無所屬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檢印하여 교부하는 推薦狀을 사용하여 選擧權者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檢印되지 아니한 推薦狀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選擧權者 7千人을 초과하여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⑦政黨 또는 候補者의 寄託金은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選擧人名簿 및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作成費用과 第171條의 3의 規定에 의한 不法施設物등에 대한 代執行費用을 控除한 후 그 殘額은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반환 또는 國庫에 귀속된다.

1. 候補者의 得票數가 有效投票總數의 100分의 7이상이거나 候補者가 當選 또는 死亡한 때에는 選擧日후 30日이내에 寄託者에게 반환한다.

2. 候補者의 得票數가 有效投票總數의 100分의 5를 초과하였으나 100分의 7미만인 때에는 第43條第8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에서 부담하는 候補者 및 演說員의 演說費用(이하 "國庫負擔演說費用"이라 한다)을 控除하여 당해 放送社에 납부한 후 그 殘額은 選擧日

후 30日이내에 寄託者에게 반환한다.

3. 候補者가 辭退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때 또는 候補者의 得票數가 有效投票總數의 100分의 5를 초과하지 못한 때에는 國庫負擔演說費用을 控除하여 당해 放送社에 납부한 후 그 殘額은 國庫에 귀속된다.

⑧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寄託金에서 부담하는 國庫負擔演說費用이 寄託金殘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政黨 또는 候補者가 그 告知를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期間안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 國庫에서 支出한 후 管轄稅務署長에게 委託하여 管轄稅務署長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하여 國庫에 納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第1項의 寄託金은 滯納處分이나 強制執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第28條第1項중 "第26條"를 "第26條 또는 第30條第1項"으로 한다.

第30條第1項 本文중 "選擧日公告日로부터 5日이내)"를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로 하고, 同項第1號중 "地方公務員"을 "地方公務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 하며, 同項第5號중 "畜産業協同組合의 任·職員"을 "畜産業協同組合·農地改良組合·山林組合·葉煙草生産協同組合·人蔘協同組合(이들

組合의 中央會 및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常勤 任·職員과 이들 組合의 中央會長 및 聯合會長"으로 한다.

第31條중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를 "本人이 직접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가서"로, "候補者의"를 "候補者(이하"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의"로 한다.

第33條第2項중 "·意思의 표시와 立候補를 위한 準備行爲는"을 ", 立候補를 위한 準備行爲 및 選擧運動을 위한 準備行爲와 政黨의 통상적인 活動은"으로 한다.

第36條第1項本文중 "演說員·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의 責任者 또는 候補者와 동일한 政黨에 所屬하는 選擧事務員"을 "選擧連絡所長·選擧運動員 또는 演說員"으로 하고, 同項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候補者의 配偶者, 候補者 및 그 配偶者의 直系尊·卑屬과 兄弟姉妹, 候補者의 直系卑屬 및 兄弟姉妹의 配偶者(이하 "家族"이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6條第2項 本文중 "第30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選擧事務長, 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의 責任者,"를 "第30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는 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으로, "選擧事務員"을 "選擧運動員"으

로 하고, 同項但書를 削除하며, 同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4項을 다음과 新設한다.

③鄕土豫備軍의 小隊長級 이상의 幹部 및 統·里·班의 長은 大統領의 任期滿了日 100日이전에 그 職에서 解任되지 아니하고는 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選擧運動員·演說員 또는 投票參觀人(不在者投票參觀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될 수 없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任된 者는 選擧日후 6月이내에는 從前의 職에 復職할 수 없다.

第37條第2項중 "看板을 달 수 있다"를 "看板을, 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建物 屋上 또는 外壁面에는 候補者의 記號(第9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投票用紙에 印刷할 候補者의 揭載順位의 番號를 말한다. 이하 같다)·寫眞·所屬政黨名과 選擧口號 기타 候補者 또는 政黨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宣傳懸板을, 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入口 또는 10미터안의 場所에는 候補者의 政見·政策 기타 候補者 또는 政黨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宣傳物을 貼付·게시하는 弘報用 揭示板을 設置할 수 있다."로 하고, 同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第2項의 宣傳懸板 및 弘報用 揭示板의 標識·規格·數量 기타 필요

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38條의 題目을 "(選擧事務所·連絡所의 設置申告)"로 하고 同條第1項중 "責任者의"를 "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의"로 하며,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39條第1項 本文중 "候補者를"을 "候補者 또는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로, "後援會"를 "後援會·休憩所"로 하고, 同項但書중 "서울特別市·直轄市·道支部,"를 "市·道支部 또는"으로, "選擧對策機構는"을 "選擧對策機構와 政治資金에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後援會는"으로 한다.

第40條의 題目중 "選擧事務員"을 "選擧運動員"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 選擧事務長 1人을 選任하여야 한다."를 "選擧事務所에 選擧事務長 1人을, 連絡所에 選擧連絡所長 1人을 두어야 한다."로 하며, 同條第2項 前段중 "選擧事務長"을 " 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으로, "選擧事務員"을 "選擧運動員"으로 하고, 同項後段중 "選擧事務員"을 "選擧運動員"으로 하며, 同條第4項을 削除한다.

第40條第5項중 "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는 選擧事務長·演說員 또는 選擧事務員"을 "選擧連絡所長은 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選擧運動員 또는 演說員"으로 하고, 同條第6項을 削除하며, 同條第7項중 "選擧事務所

와 連絡所의 責任者·演說員 및 選擧事務員"을 "選擧連絡所長·選擧運動員 및 演說員"으로, "휴대하여야 하며,"를 "選擧運動時 항시 달고 있어야 하며,"로, "그 身分證明書를"을 "이를"로 한다.

第41條중 "候補者·選擧事務長·會計責任者·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投票 및 開票參觀人·演說員 및 選擧事務員"을 "候補者, 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 會計責任者, 選擧運動員, 演說員, 投票·不在者投票 및 開票參觀人과 候補者의 家族"으로 한다.

第43條第1項중 "政見 또는 所屬政黨의 政綱·政策·選擧綱領등을"을 "候補者의 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政策과 候補者 또는 政黨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로, "텔레비젼" 을 "텔레비전"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텔레비젼"을 각각 "텔레비전"으로 하며, 同條第8項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9項을 第10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9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候補者와 演說員이 텔레비전 및 라디오放送施設을 이용한 演說費用중 候補者가 행한 各 3回의 演說費用과 演說員이 행한 各 2回의 演說費用은 國庫에서 부담한다.

⑨有線放送管理法에 의한 中繼有線放送社를 경영하는 者가 第1項의 放

送演說을 中繼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든 候補者와 演說員에게 公平하여야 한다.

第44條第3項중 "40分" 을 "2時間"으로 하고, 同條第4項중 "텔레비젼"을 "텔레비전"으로 하며, 同條第5項중 "大統領令"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하고, 同條第7項중 "第43條第2項 後段"을 "第43條第2項 後段 및 第9項"으로 한다.

第45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第43條第2項 後段 및 第9項의 規定은 經歷放送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45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5條의 2(放送廣告) ①政黨 또는 候補者는 候補者의 經歷·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政策과 候補者 또는 政黨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選擧運動期間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별로 各 5回 이내에서 廣告할 수 있으며 廣告時間은 1回에 1分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第43條第2項 後段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를 실시하는 放送施設의 經營者는 放送廣告의 日時와 廣告內容등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

라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放送廣告는 放送法第35條第2項 및 韓國放送廣告公社法第15條本文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④第1項의 放送廣告는 各 政黨 및 候補者에게 公正하여야 한다.

第46條第1項중 "政見 또는 所屬政黨의 政綱·政策·選擧綱領등을 各 日刊新聞에 3回에 한하여"를 "政治·經濟·社會·文化·外交·國防 기타의 國政에 관한 政見·政策과 候補者 또는 政黨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選擧運動期間중 各 日刊新聞에 各 4回이내에서"로 하고, 同條第3項중 "大統領令"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한다.

第4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7條(演說會) ①政黨·候補者·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은 選擧運動期間중 選擧運動을 하기 위하여 演說會를 開催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演說會는 開票區별로 5回이내 開催하되 인접한 2 이상의 開票區의 演說會를 한 장소에서 共同開催할 수 있다. 演說會를 共同開催하는 때에는 共同開催하는 開票區마다 各 1回의 演說會를 開催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演說會"라 함은 사전에 일정한 場所와 時間을 정하여 多

數人을 集合하게 하여 실시하는 政見發表會·座談會 및 討論會등을 말한다.

④演說會를 開催하고자 하는 者는 開催日前日까지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이경우 演說會를 共同開催하는 때에는 各 開票區를 관할하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演說會 開催의 申告를 하는 때에는 적정한 數의 秩序維持人을 申告하여야 하며, 秩序維持人은 秩序維持人임을 표시하는 腕章을 着用하고 演說會場의 秩序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第4項의 申告가 동일한 場所에 2이상이 있을 때에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順位를 調整하여야 한다.

⑦演說會의 場所使用은 1回에 5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演說會를 共同開催하는 때에는 1回에 6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⑧第1項의 演說會에 있어서는 候補者외에 每回 4人에 한하여 演說을 할 수 있다. 다만, 演說會를 共同開催하는 때에는 候補者외에 每回 7人에 한하여 演說을 할 수 있다.

⑨第1項의 演說會場에서 候補者와 演說員은 錄音器 또는 錄畵器(비디오 및 오디오器機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政見發表 또는 演說을 할 수 있다.

⑩第1項의 演說會의 開催時間중에는 演說會場에서 당해 政黨 또는 候補者를 支持·宣傳하는 내용의 노래를 하거나 이를 演說會場에 設置된 擴聲裝置를 사용하여 放送할 수 있다.

⑪演說會를 開催하는 者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演說會場의 標識를 하고 애드벌룬 1個를 설치할 수 있다.

⑫第1項의 演說會의 告知를 위하여 사용될 壁報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國庫負擔으로 작성하여 政黨 또는 候補者의 申請에 의하여 교부한다.

⑬第12項의 壁報의 枚數는 演說會 1回에 200枚(演說會를 共同開催하는 경우 각 開票區마다 200枚)로 하고, 그 規格과 기재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⑭演說會를 開催하는 者가 第12項의 告知壁報를 貼付한 때에는 演說會終了후 지체없이 撤去하여야 한다.

第48條第2項중 "許可하여야 하며,"를 "許可하되, 모든 候補者에게 균등하

게 이용할 機會를 부여하여야 하며,"로 한다.

第5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0條(宣傳物의 着用·휴대등) ①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는 第47條의 演說會場에서 候補者의 記號·姓名·所屬政黨名 또는 寫眞등을 게재한 標識板·標札·어깨띠 또는 手旗를 附着·着用하거나 휴대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板·標札·어깨띠 및 手旗의 規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50條의 2 및 第50條의 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0條의 2(政見·政策集의 配付등) ①政黨 또는 候補者는 候補者의 經歷·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政策과 候補者 또는 政黨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政見·政策集을 製作·配付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政見·政策集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70面(표지를 포함한다)이내로 작성하는 1種으로 하되, 그 部數는 世帶數의 10分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第1項의 政見·政策集은 演說會場·選擧事務所·連絡所·政黨의 黨舍·政黨의 所屬黨員集會에서의 配付·街頭配付·戶別投入과 郵便配達에

한하고, 戶別訪問에 의한 配付·新聞揷入에 의한 配付와 揭示·撒布行爲는 할 수 없다.

④第1項의 政見·政策集에는 製作根據, 製作·配付하는 政黨名 또는 候補者 姓名 및 印刷所의 名稱·住所·電話番號를 표시하여야 하며, 政黨 또는 候補者가 政見·政策集을 配付하고자 하는 때에는 配付日前日까지 5部를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50條의 3(小型印刷物의 配付등) ①政黨 또는 候補者는 候補者의 記號·寫眞·姓名·年齡·所屬政黨名·職業·經歷 ·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政策과 候補者 또는 政黨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小型印刷物을 製作하여 配付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小型印刷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이내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2面이내로 작성하는 小型印刷物(이하 "傳單型 小型印刷物"이라 한다) 1種과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20面이내로 작성하는 小型印刷物(이하 "冊子型 小型印刷物"이라 한다) 3種으로 하며, 그 數量은 각각 世帶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第50條의 2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小型印刷物에 이를 準用한다.

第51條第1項중 "開票區마다 20枚이내의, 郡에 있어서는 邑·面마다 3枚 이내의"를 "管轄洞數에 상당하는 枚數이내의, 郡에 있어서는 邑마다 2枚 이내의, 面마다 1枚의"로 한다.

第51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1條의 2(無所屬候補者의 政黨標榜금지) 無所屬候補者는 特定政黨에 所屬함을 標榜할 수 없다.

第52條의 題目중 "選擧運動의"를 "著述등의"로 하고, 同條第1項중 "宣傳行爲를 이 法에 規定된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를 "내용이 일부라도 포함된 著述·演藝·映畵·廣告·寫眞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이 法에 規定된 이외의 방법으로 配付·上演 또는 게시할 수 없다"로 한다.

第52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2條의2(議政活動報告의 제한) 國會議員 또는 地方議會議員은 選擧日 公告日부터 選擧日까지에는 歸鄕報告會나 議政報告書(印刷物 또는 錄畵物등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議政活動(地域區活動 기타 議員活動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地域區民에게 보고할 수 없다.

第53條第2項중 "開票區마다"를 "選擧事務所와 連絡所마다"로 하고, 同

條第4項중 "標識를 하여야 하며 自動車와 船舶은 그 運行區間을 제한받지 아니한다"를 "標識를 하여야 하고 그 自動車와 船舶은 運行區間을 제한받지 아니하며,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壁報와 第50條의 3의 規定에 의한 小型印刷物을 附着할 수 있다"로 하며, 同條第6項 前段중 "候補者演說會에 있어서는 당해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演說員演說會에 있어서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를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로 하고, 同項 後段중 "告知區域은 候補者演說會에 있어서는 당해 市·道로 하고, 演說員演說會에 있어서는 당해 區·市·郡으로 하며, 演說會의 告知는 關係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를 "告知區域과 時間은 당해 開票區(演說會를 共同開催하는 경우에는 各 開票區를 말한다)안에서 開票區마다 區·市에 있어서는 1時間, 郡에 있어서는 3時間을 초과할 수 없고, 演說會의 告知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로, "選擧事務員"을 "選擧運動員"으로 한다.

第61條의 2 내지 第61條의 4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61條의 2(他演說會의 금지) 누구든지 選擧運動期間중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演說會를 제외하고는 多數人을 集會하게 하여 個人政見發表會·座談會·討論會·時局講演會 기

타의 演說會를 開催할 수 없다.

第61條의 3(錄音器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選擧運動期間중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錄音器 또는 錄畵器를 사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第61條의 4(電報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選擧運動期間중 電信·電報 또는 書信을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第6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2條(公務員등의 選擧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公務員(國會議員, 地方議會議員, 國會議員의 補佐官·秘書官·秘書를 제외한다), 政府 및 地方自治團體의 投資機關(第30條 第1項 第4號 및 地方公企業法 第2條 第1項에 規定된 機關을 말한다)의 任·職員, 統·里·班의 長과 鄕土豫備軍의 小隊長級 이상의 幹部, 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國民運動團體로서 政府의 出捐·補助를 받는 團體(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常勤 任·職員과 이들 團體의 中央會長은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職員 또는 一般人에게 敎育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政黨 또는 특정 候補者의 業績을 弘報하는 행위

2. 選擧運動期間중 소속職員 또는 一般人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法令이 정하는 이외의 金品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約束하는 행위. 다만, 冠婚喪祭 기타 儀禮的이거나 職務上의 행위로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選擧運動의 企劃에 참여하거나 그 企劃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4. 政黨 또는 候補者에 대한 選擧權者의 支持度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5. 選擧運動期間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豫算으로 시행하는 事業중 즉시 工事를 진행하지 아니할 事業의 起工式을 거행하는 행위

6. 選擧運動期間중 正常的 業務이외의 出張

7. 選擧運動期間중 休暇期間에 그 業務와 관련된 機關이나 施設을 訪問하는 행위

第63條第2項을 第3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冠婚喪祭儀式이 거행되는 場所와 道路·市場·店鋪·茶房·待合室 기타 多數人이 왕래하는 公開된 場所에서 政黨 또는 候補者에 대한 支持를 호소

할 수 있다.

第6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5條(輿論調査의 結果公表禁止) ①누구든지 選擧日公告日부터 選擧日까지에는 選擧에 관하여 政黨에 대한 支持度나 當選人을 豫想하게 하는 輿論調査(人氣投票나 模擬投票를 포함한다)의 經緯와 그 결과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投票用紙와 유사한 模型에 의한 방법으로 하거나,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또는 政黨이 그 名義를 밝혀 할 수 없다.

第66條를 削除한다.

第67條의 題目을 "(行列등의 금지)"로 하고, 同條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第47條의 演說會場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7條의 2 내지 第67條의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67條의 2(演說會場에서의 騷亂行爲의 금지) 누구든지 第47條의 演說會場에서 暴行·脅迫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演說會場의 秩序를 문

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거나 횃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演壇과 그 주변의 照明을 위하여 횃불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7條의 3(街頭放送의 금지) 누구든지 第5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演說會의 告知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擧運動을 위하여 街頭放送을 할 수 없다.

第67條의 4(有線放送의 금지) 누구든지 第43條第9項, 第44條第7項 및 第4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中繼放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擧運動期間중 有線放送(構內放送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第70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 第71條에서 같다) 또는 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 第71條에서 같다)은 大統領任期滿了日전 180日(再選擧·大統領이 闕位된 때의 選擧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事由確定日, 選擧를 延期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延期決定日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候補者登錄을 하기 前까지에는 당해 選擧에 관하여, 候補者登錄이 끝난 때부터 選

擧日까지에는 당해 選擧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選擧權者 또는 그 家族 및 그들의 모임이나 行事 또는 機關·團體에 일체의 寄附行爲를 할 수 없다.

第70條第2項중 "政黨, 候補者의 父母·配偶者·子 및 兄弟姉妹(이하 "家族"이라 한다), 選擧事務長, 會計責任者, 演說員, 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 選擧事務員"을 "候補者의 家族, 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 會計責任者, 選擧運動員, 演說員"으로, "당해 選擧에 관하여 名稱如何를 불문하고 候補者가 하는 것으로 推定될 수 있는 방법으로 寄附行爲를 할 수 없다."를 "당해 選擧에 관하여 選擧權者 또는 그 家族 및 그들의 모임이나 行事 또는 機關·團體에 名稱如何를 불문하고 候補者 또는 그 所屬政黨이 하는 것으로 推定될 수 있는 방법이나 候補者 또는 그 所屬政黨의 名義를 밝혀 寄附行爲를 할 수 없으며, 당해 選擧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候補者 또는 政黨名義로 寄附行爲를 하는 것은 당해 選擧에 관하여 候補者 또는 政黨이 하는 것으로 推定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본다."로 한다.

第70條第3項 및 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에서 "寄附行爲"라 함은 金錢·花環·달력·서적·飮

食物등 金品의 제공, 物品이나 施設의 無償貸與·無償讓渡, 債務의 免除·輕減, 入黨願書와 교환하거나 入黨願書를 받아주는 代價의 제공, 觀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演說會·政黨集會에 참석하는 者 또는 이들 集會에 聽衆을 動員해 주는 者에 대한 代價의 제공, 交通施設편의의 제공, 宗教·社會團體등에 金品의 제공 및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와 그 제공을 約束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政黨, 候補者 또는 그 家族, 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 會計責任者, 選擧運動員, 演說員 또는 候補者와 관계있는 會社 기타의 法人·團體가 행하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를 寄附行爲로 보지 아니한다.

1. 冠婚喪祭의 儀式이 거행되는 場所를 訪問하여 儀禮的인 범위안에서 祝儀金 또는 弔意金을 제공하는 행위
2. 選擧事務所·連絡所 또는 政黨의 黨舍를 訪問하는 者나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政黨活動으로서의 團合大會와 國會議員選擧法 第38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國會議員 또는 地方議會議員의 職務上 행위로서의 歸鄕報告會에 참석한 者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茶菓나 飮

料(酒類를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3. 政黨의 創黨大會·改編大會 및 選擧日公告日전에 政黨의 中央黨이 행하는 黨員硏修敎育에서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食事·茶菓나 飮料(酒類를 제외한다) 또는 敎材(膳物이나 紀念品을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4. 奬學財團이 장기적으로 지급하여온 奬學金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奬學金의 금액과 대상·지급방법 등을 확대 변경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기타 儀禮的이거나 職務上의 행위로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행위

第71條중 "會計責任者·演說員, 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選擧事務員"을 "選擧連絡所長·會計責任者·選擧運動員·演說員"으로 한다.

第73條중 "選擧運動을 위하여"를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로, "방법으로"를 "방법으로라도"로, "標札등을 設置·게시하거나 着用할 수 없다"를 "花環 기타의 施設 또는 물건을 設置·진열·게시·휴대하거나 標札등 着用物을 着用 또는 印刷物을 製作·配布할 수 없다."로 한다.

第74條를 다음과 같이한다.

第74條(自動車 위에서의 選擧運動 금지) 누구든지 自動車에 乘車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第47條의 演說會場에서의 정지된 自動車위에서 演說을 하거나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5條중 "第46條"를 "第45條의 2 및 第46條"로 한다.

第77條를 削除한다.

第78條중 "祝賀·慰勞 기타의 饗應"을 "祝賀·慰勞의 饗應 기타의 이익"으로 한다.

第79條第1項第2號중 "會計責任者·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演說員 및 選擧事務員의 手當과 實費補償"을 "選擧連絡所長·會計責任者·選擧運動員 및 演說員의 實費補償"으로 하고, 同條同項 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同項 第6號중 "·新聞廣告料 및 懸垂幕의 製作·揭示經費"를 ",放送廣告料, 新聞廣告料, 懸垂幕·宣傳懸板·弘報用 揭示板의 製作·揭示經費와 政見·政策集 및 小型印刷物의 작성·配付에 필요한 經費"로 한다.

5. 投票參觀人의 手當

第82條第2項중 "選擧事務員"을 "選擧運動員"으로 한다.

第91條第2號를 削除한다.

第92條의 題目을 "(選擧運動員등에 대한 實費補償)"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會計責任者·演說員·選擧事務員과 投票·開票參觀人에 대하여는 日當을 支給하는 이외에"를 "選擧連絡所長·會計責任者·選擧運動員 및 演說員에 대하여는"으로 하며, 同條第2項중 "日當 및 實費補償의 종류와 金額에 관하여는"을 "實費補償의 종류와 金額은"으로 하고, 同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費補償외에 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會計責任者·選擧運動員 또는 演說員에 대한 金品 기타 財産上의 이익의 제공은 이를 第70條의 寄附行爲로 보며, 그 제공의 受領 또는 요구는 第71條의 寄附의 受領 또는 요구로 본다.

第93條第1項중 "30日"을 "28日"로 한다.

第95條第1項 및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3項중 "邑·面 또는 洞·里事務所"를 "邑·面·洞 또는 里事務所"로 하며, 同條第6項중 "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는"을 "選擧連絡所長은"으로 하고, 同條 第8項중 "당해"를 "당해 區域을 관할하는"으로, "敎育公務員"을 "敎員"으로 한다.

①投票所는 投票區마다 設置하되, 당해 投票區안에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投票所를 設置할 수 있는 적정한 場所가 없는 때에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決定에 의하여 選擧人이 投票하기 편리한 인접한 다른 投票區에 投票所를 設置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所를 設置한 때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日전 10日까지 그 名稱과 所在地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變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이를 公告하여 選擧人에게 周知시켜야 한다.

第95條의 2 및 第95條의 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95條의 2(不在者投票所의 設置) ①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日전 13日부터 選擧日전 4日까지의 期間(이하 "不在者投票期間"이라 한다)중 당해 事務所 所在地에 不在者申告人(居所投票者를 제외한다)이 投票할 投票所(이하 "不在者投票所"라 한다)를 設置·운영하되, 하나의 區·市·郡안에 2이상의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있는 때에는 區·市·郡 單位로 不在者投票所를 共同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으며,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管轄區域안의 不在者投票豫想者의 數와 分布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不在者投票期間중 不在

者投票豫想者가 投票를 마칠 수 있는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에도 不在者投票所를 設置·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在者投票所를 設置하는 때에는 選擧日전 18日까지 그 名稱·所在地 및 設置期間을 公告하고, 管轄區域안의 投票區마다 5個所에 公告文을 貼付하며 당해 開票區의 選擧連絡所長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不在者投票所의 設置場所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第1項의 不在者投票所에는 記票所·投票函·選擧管理委員會委員 및 參觀人의 座席 기타 投票管理에 필요한 施設을 設備하여야 한다.

④不在者投票所의 投票管理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가 不在者投票所마다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 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중 政黨推薦委員을 모두 포함하여(政黨推薦委員이 참여를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한 3人이상의 委員(이하 "不在者投票管理委員"이라 한다)이 행한다.

⑤不在者投票所를 設置한 選擧管理委員會는 不在者投票事務를 補助하기 위하여 關係 行政機關의 公務員 또는 敎員중에서 不在者投票事務從事員을 둔다.

⑥第95條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은 第1項의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⑦第1項의 不在者投票所의 設置·公告 및 통보, 不在者投票事務從事員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95條의 3(機關·施設안의 不在者投票所) ①不在者投票期間중 계속하여 第95條의 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所에 가서 投票할 수 없는 第17條第2項第3號의 不在者申告人이 소속한 機關 또는 施設(船舶을 제외한다)의 長은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당해 機關 또는 施設에 不在者投票所를 設置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關 또는 施設의 長이 不在者投票所를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그 不在者申告人數·사유·所在地 등을 명시하여 選擧日전 20日까지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許可를 申請하여야 하며,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機關 또는 施設의 長과 協議하여 不在者投票日時와 場所를 정하여 이를 許可하고 당해 開票區의 選擧連絡所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所의 投票管理는 第95條의 2 第4項

의 規定에 準하여 지정한 不在者投票管理委員이 出張하여 행한다.

④第95條第5項·第6項 및 第95條의 2 第3項·第5項의 規定은 第1項의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⑤第1項의 不在者投票所設置의 申請·許可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96條第2項중 "異常有無"를 "異狀有無"로 하여 이를 第3項으로 하고, 第3項을 第5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2項 및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第95條의 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所는 不在者投票期間중 매일 上午 9時에 열고 下午 4時에 닫는다. 第1項 但書의 規定은 不在者投票所의 경우에도 같다.

④第95條의 2 및 第95條의 3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所의 投票를 開始하는 때에는 不在者投票管理委員은 投票函 및 記票所내외의 異狀有無에 관하여 檢査하여야 하며 이에는 不在者投票參觀人이 관여하여야 한다. 다만, 不在者投票開始時刻까지 不在者投票參觀人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投票하러 온 不在者申告人으로 하여금 관여하게 하여야 한다.

第98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6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不在者投票所의 投票函(이하 "不在者投票函"이라 한다)과 郵便으로 접수한 投票를 보관하는 投票函(이하 "郵便投票函"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數는 不在者申告人數를 감안하여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정한다.

⑥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視覺障碍로 인하여 자신이 標를 할 수 없는 選擧人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殊投票用紙 또는 投票補助用具를 製作·사용할 수 있다.

第100條第5項중 "選擧事務所나 連絡所의 責任者가"를 "選擧事務長이나 選擧連絡所長이"로 하고, 同條에 第8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⑧投票通知票와 受領證의 작성은 電算組織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性別 및 生年月日의 기재는 住民登錄番號의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第101條第2項 前段중 "교부하여야 한다."를 "교부하는 때에는 100枚이내의 범위안에서 私印이 미리 捺印된 投票用紙를 그 때마다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同項後段중 "第1黨과 第2黨이 지정하는"을 "第1黨·第2黨

및 第3黨이 추천한"으로, "大統領令으로"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로 하며, 同項 但書중 "당해 政黨에서 지정하는 委員이 없거나"를 "당해 政黨推薦委員이 없거나"로 한다.

第101條 第5項중 "16日"을 "15日"로, "또는 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가"를 "·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이"로 하고, 同條 第6項중 "郵便投票"를 "郵便投票用紙"로, "無料登記郵便으로 한다."를 "登記郵便으로 하되, 그 料金은 國庫에서 부담한다"로 하여 이를 第7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6項과 第8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⑥政黨·候補者·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이 第50條의 3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小型印刷物을 郵便投票用紙와 함께 송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區·市·郡의 不在者申告人名簿에 登載된 者의 數에 상당하는 枚數의 傳單型 小型印刷物을 選擧日전 16日 上午 9時까지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그 小型印刷物과 投票節次 기타 選擧에 관한 啓導文을 郵便投票用紙와 同封하여 發送하여야 한다. 이 경우 選擧日전 16日 上午 9時까지 傳單型 小型印刷物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發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⑧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投票用紙의 封緘 및 보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02條第1項중 "또는 第21條第2項의"를 "·第21條第2項 또는 第21條의 2의"로 한다.

第103條第5項 및 第6項을 削除하고, 同條第4項중 "第3項의"를 "第6項의"로 하여 이를 第7項으로 하며, 同條第3項중 "盲人"을 "視覺障碍"로 하여 이를 第6項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第5項을 하며, 同條에 第2項 내지 第4項 및 第8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不在者申告人(居所投票者를 제외한다)은 不在者投票期間중 不在者投票所에 가서 不在者投票管理委員과 不在者投票參觀人 앞에서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로부터 송부받은 發送用外封套 및 投票用紙와 住民登錄證 기타 官公署·公共機關이 발행한 寫眞이 貼付된 本人임을 확인할 수 있는 證明書를 제시하고 本人임을 확인받은 후 記票所에서 投票用紙에 候補者가 기재된 欄중 하나를 選擇하는 標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內封套에 넣어 封緘한 다음 內封套를 回送用外封套에 넣어 封緘하고 그 外封套에 居所·姓名을 기재한 후 不在者投票管理委員 앞에 가서 不在者投票所에서 投票한 것

임을 확인하는 確認印을 回送用外封套 封緘部分의 上·中·下 3個所에 각각 捺印받아 不在者投票管理委員과 不在者投票參觀人의 앞에서 不在者投票函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不在者投票所에서 投票하기 전에 候補者를 選擇하는 標를 미리 한 投票紙는 無效로 하며 本人임을 확인할 수 있는 證明書를 제시하지 아니한 不在者申告人에게 投票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不在者投票管理委員은 不在者投票期間중 매일의 不在者投票마감후 또는 2回(上午 12時와 下午 4時)에 걸쳐서 不在者投票參觀人의 참여하에 不在者投票函을 開函한 후 確認印의 漏落여부를 확인하여 確認印이 漏落된 것은 이를 補完·捺印하고 不在者投票數를 計算하여 郵遞局長에게 引繼하여 登記郵便으로 發送하여야 한다.

④居所投票者는 居所에서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로부터 송부받은 投票用紙에 候補者가 기재된 欄중 하나를 選擇하는 標를 한 후 內封套에 넣어 封緘한 다음 內封套를 回送用外封套에 넣어 封緘하고 그 外封套에 居所·姓名을 기재한 후 本人의 私印을 回送用外封套 封緘部分의 上·中·下 3個所에 捺印(拇印 또는 署名을 제외한다)하여 登記郵便으로 發送하여야 한다.

⑧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印의 規格·捺印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04條중 " "○" 標"를 " "㉦" 標"로 하고, 同條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居所投票者가 居所投票를 하는 때에는 "○"標를 할 수 있다.

第106條第2項중 "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는"을 "選擧連絡所長은"으로 하고 同條第3項 내지 第7項을 第5項 내지 第9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3項 및 第4項과 第10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投票參觀人의 申告가 없거나 申告한 人員數가 6人에 미달하는 때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가 選擧權者중에서 本人의 승낙을 받아 6人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者를 投票參觀人으로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가 선정한 投票參觀人은 정당한 이유없이 參觀을 거부하거나 그 職을 辭任할 수 없다.

⑩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에서 선정한 投票參觀人의 手當등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庫에서 부담한다.

第106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06條의 2(不在者投票參觀) ①不在者投票所를 設置·운영하는 選擧管理委員會는 不在者投票參觀人으로 하여금 不在者投票狀況을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不在者投票參觀人은 政黨·候補者·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이 選擧權者중에서 不在者投票所마다 2人을 선정하여 選擧日전 15日까지(第95條의 3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所의 不在者投票參觀人은 그 不在者投票所의 投票日전 2日까지)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하되, 申告후 언제든지 交替할 수 있으며 不在者投票期間중에는 不在者投票所에서 交替申告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參觀人의 선정이 없거나 한 候補者가 선정한 不在者投票參觀人밖에 없는 때에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가 選擧權者중에서 本人의 승낙을 받아 4人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者를 不在者投票參觀人으로 한다.

④第106條第4項·第5項 및 第7項 내지 第10項의 規定은 不在者投票參觀人에 이를 準用한다.

第107條의 題目을 "(投票所등의 出入制限)"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附着하여야 한다."를 "附着하여야 하며, 이 規定에 의한 附着物 이외는 選擧와 관련한 어떠한 表示物도 附着할 수 없다."로 하고, 同條에 第3項과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第2項의 附着物은 다른 사람에게 讓渡·讓與할 수 없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第108條의 題目을 "(檢事등의 投票所등 出入禁止와 秩序維持)"로 하고, 同條第2項중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그 委員會의 決議에 의하여"를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나 委員 및 職員은"으로, "警察公務員의"를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에게"로 하며, 同條第3項중 "警察公務員"을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으로 하여 이를 第4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3項과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援助要求를 받은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第109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第110條의 題目중 "騷亂言動禁止"를 "騷亂言動금지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騷亂한 言動을 하는 者가 있는 때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을 "騷亂한 言動을 하거나 특정 候補者를 支持 또는 反對하는 言動을 하는 者가 있는 때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나 委員 및 職員은"으로 하고, 同條第3項 但書 및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第10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記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第111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選擧人은 자신이 記票한 投票紙의 내용을 公開할 수 없으며, 公開한 投票紙는 無效로 한다.

第115條의 題目을 "(投票關係書類의 引繼)"로 하고, 同條第1項중 "選擧"를 "投票"로 하며,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116條第5項중 "당해 區域안의"를 "당해 區域을 관할하는"으로, "教育公務員중에서"를 "教員과 銀行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第2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職員중에서"로, "教育公務員만으로"를 "教員 및 金融機關의 職員만으로"로 한다.

第117條第2項중 "投票函이 到着된 때에는 그 封鎖·封印을 檢査하고 管理狀況을"를 "投票區에서 송부된 投票函의 引受·引繼節次를 參觀하고 投票函의 封鎖·封印을 檢査하며 그 管理狀況을"으로 하고, 同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郵便投票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政黨推薦委員의 參與下에 回送用外封套의 確認印 또는 居所投票者의 私印捺印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즉시 郵便投票函에 投入·보관하여야 하며, 郵便投票函은 開票參觀人 參與下에 選擧日 下午 6時이후에 開票場所로 移送한 후 回送用 外封套를 開封하여 一般投票函의 投票紙와 混合하여 開票한다.

第118條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候補者別 得票數의 발표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投票區별로 작성·集計된 開票狀況表에 의하여 投票區 單位로 하되, 출석한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은 발표전에 得票數를 檢閱하고 開票狀況表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開票事務를 遲延시키는 委員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開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別 得票數의 발표전에는 이를 報道할 수 없다.

第119條第9項을 第11項으로 하고, 同條第8項중 "第7項"을 第9項"으로 하여 이를 第10項으로 하며, 同條第7項을 第9項으로 하고, 同條第6項중 "촬영할 수 있다."를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委員長이 開票所안 또는 一般觀覽人席에 지정한 場所에 電話·컴퓨터 기타의 通信施設을 設置하고 이를 이용하여 開票狀況을 候補者 또는 政黨에 통보할 수 있다"로 하여 이를 第8項으로 하며, 同條第3項 내지 第5項을 第5項 내지 第7項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에 第3項·第4項 및 第1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第1項의 開票參觀人은 候補者마다 8人을 선정하여 選擧日전 3日부터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하여 參觀하게 하되, 申告후 언제든지 交替할 수 있으며 開票日에는 開票所에서 交替申告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開票參觀人의 申告가 없거나 한 候補者가 선정한 開票參觀人밖에 없는 때에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選擧權

者중에서 本人의 승낙을 받아 8人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者를 開票參觀人으로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선정한 開票參觀人은 정당한 이유없이 參觀을 거부하거나 그 職을 辭任할 수 없다.

⑫開票參觀人의 手當등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庫에서 부담한다.

第120條第5項을 第6項으로 하고, 同條第4項중 "警察公務員은"을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으로 하여 이를 第5項으로 하며, 同條第3項중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그 委員會의 決議에 의하여"를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나 委員은"으로, "警察公務員의"를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에게"로 하고, 同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援助要求를 받은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21條第1項第5號중 "○標"를 "Ⓐ標"로 하고, 同條同項 第6號 내지 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同項에 第9號 및 第10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6. ㉦標외에 다른 사항을 記入하거나 候補者欄외에 ㉦標를 追加한 것

7. 郵便投票의 경우 內封套 또는 回送用外封套가 封緘되지 아니한 것

8. 郵便投票의 경우 回送用外封套의 封緘部分에 確認印 또는 居所投票者의 私印捺印이 漏落된 것.

9. 不在者投票所에서 한 郵便投票의 경우 選擧管理委員會의 記票用具외의 用具에 의하여 記票된 것

10. 郵便投票의 경우 不在者投票所에서 投票하기로 申告한 者가 居所投票의 방법으로 投票하거나 居所投票者가 不在者投票所에서 投票한 것

第121條第2項第1號중 "○標가"를 "㉦標가"로, "○標안이"를 "㉦標안이"로, "당해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記票用具"를 "選擧管理委員會의 記票用具"로 하고, 同條同項에 第7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7. 居所投票의 경우 選擧管理委員會의 記票用具외의 用具에 의하여 記票되거나 ㉦標외의 ○標로 記票한 것

第125條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第134條 및 第135條의 規定에 의한 選擧에 관한 訴訟이 제기

되지 아니하거나 係屬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保存期間을 단축할 수 있다.

第130條第2項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30日"을 "28日"로 한다.

第132條第2項중 "12日에"를 "15日까지"로 하고, 同條第4項중 "날로부터 5日"을 "날부터 3日"로 한다.

第133條第2項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12日에"를 "15日까지"로 하고, 同條第3項중 "날로부터 5日"을 "날부터 3日"로 한다.

第137條 本文중 "날로부터 1年"을 "날부터 180日"로 한다.

第138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38條의 2(印紙貼付에 관한 特例) 選擧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는 民事訴訟등印紙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訴訟書類에 貼付하여야 할 印紙는 民事訴訟등印紙法에 規定된 額의 10倍로 한다.

第140條第1項중 "選擧人名簿에"를 "選擧人名簿(不在者申告人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로, "6月이하의"를 "1年이하의"로, "30萬원"을 "100萬원"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1年"을 "3年"으로, "50萬원"을 "300萬원"으로 한다.

第141條第1項 本文중 "150萬원"을 "300萬원"으로 하고, 同條同項第1號

및 第2號중 "會計責任者·演說員·參觀人·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 또는 選擧事務員"을 "選擧連絡所長·會計責任者·選擧運動員·演說員 또는 參觀人"으로 하며, 同條同項第5號를 削除하고, 同條同項第6號중 "요구하거나 제공의"를 "제공의"로 하고, 同條第2項중 "第1項의 행위를 한 때에는 4年"을 "第1項 各號 또는 第2項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5年"으로 하여 이를 第3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勸誘하거나 요구 또는 알선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4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42條(多數人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財産上의 이익을 도모할 目的으로 政黨 또는 候補者를 위하여 多數의 選擧人·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會計責任者·選擧運動員·演說員 또는 參觀人에 대하여 第141條第1項 各號의 행위를 한 者는 6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00萬원이상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勸誘하거나 요구 또는 알선한 者는 6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이상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43條第1項本文중 "50萬원이상 250萬원이하의"를 "200萬원이상 500萬원이하의"로 하고, 同條同項第3號를 削除하며, 同條第2項중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를 "그 제공의"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를 "者"로 하여 이를 同條第1項第4號로 하고, 同條第3項중 "第1項의"를 "第1項 各號 또는 第2項에 規定된'으로 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勸誘하거나 요구 또는 알선한 者는 6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44條第1項第2號중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를 "그 제공의"로 하고, 同條第2項중 "알선 또는 勸誘를 한"을 "勸誘하거나 요구 또는 알선한"으로, "50萬원이상 250萬원"을 "200萬원이상 500萬원"으로 한다.

第145條중 "150萬원"을 "300萬원"으로 한다.

第147條第1項 本文중 "5年"을 "6年"으로, "50萬원이상 250萬원"을 "300萬원이상 600萬원"으로 하고, 同條同項第1號중 "會計責任者·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選擧事務員"을 "選擧連絡所長·會計責任者·選擧運動員"

으로 하며, 同條同項에 第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業務·雇傭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指揮·監督下에 있는 者에게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를 支持·추천하거나 反對하도록 強要하여 選擧의 自由를 방해한 者

第147條에 第3項 및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이 法에 規定된 演說會場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候補者 또는 演說員을 暴行한 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處罰한다.

1. 主謀者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禁錮

2. 다른 사람을 指揮하거나 다른 사람에 率先하여 행동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禁錮

3. 附和하여 행동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

④第1項 또는 第3項의 罪를 犯한 경우에 그 휴대한 물건은 이를 沒收한다.

第149條 本文중 "5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50萬원이하의 罰金에"를 "6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로 한다.

第150條第1項중 "100萬원"을 "200萬원"으로 하고, 同條第2項 및 第3項중 "150萬원"을 "300萬원"으로 한다.

第151條第1項중 "2年"을 "3年"으로, "100萬원"을 "300萬원"으로 한다.

第152條第1項중 "投票所나"를 "投票를 방해하기 위하여 住民登錄證(第103條第2項의 本人임을 확인할 수 있는 證明書를 포함한다)을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者 또는 投票所(不在者投票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로, "기타"를 "投票所에서의 投票公開등 기타"로 한다.

第154條중 "50萬원이상 350萬원"을 "300萬원이상 700萬원"으로 한다.

第155條의 題目을 "(投票所등에의 濫入罪)"로 하고, 同條第2項중 "150萬원"을 "300萬원"으로 한다.

第156條第1項 本文중 "다음의"를 "다음 各號의"로 하고, 同條第1項第2號중 "他人"을 "다른 사람"으로 하며, 同條同項第3號중 "1年"을 "3年"으로, "50萬원"을 "300萬원"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6月"을 "1年"으로, "30萬원"을 "100萬원"으로 한다.

第157條第1項중 "2年"을 "3年"으로, "100萬원"을 "300萬원"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50萬원이하의 罰金에"를 "5年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에"로 한다.

第158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58條의 2(參觀人의 義務懈怠罪) 第106條第3項·第105條의 2第3項

또는 第1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管理委員會가 선정한 參觀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參觀을 거부하거나 懈怠한 때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59條第1項중 "他人의 소속·思想·身分·職業 또는 經歷등에"를 "自己 또는 다른 사람의 소속·思想·행위·身分·職業 또는 經歷등 모든 사항에"로, "5年"을 "6年"으로, "250萬원"을 "300萬원이상 600萬원"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5年"을 "6年"으로 한다.

第160條第1項 및 第161條중 "150萬원"을 "300萬원"으로 한다.

第161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61條의 2(姓名등의 虛僞表示罪) 當選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眞實에 반하는 姓名·名稱 또는 身分의 표시를 하여 郵便·電報 또는 電話등에 의한 通信을 한 者는 4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4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62條第1項 本文중 "150萬원"을 "300萬원"으로 하고, 同條同項第1號 및 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2項중 "懲役이나 禁錮 또는 250萬원이하의 罰金에"를 "懲役 또는 禁錮에"로 한다.

1. 第34條 내지 第37條第1項, 第40條第2項 및 第7項, 第49條,

第56條, 第60條, 第61條의 3, 第61條의 4, 第63條, 第64條, 第67條, 第67條의 3, 第67條의 4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38條, 第39條第1項, 第40條第5項, 第47條第4項 또는 第6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運動을 한 者

第163條第1項 本文중 "100萬원"을 "200萬원"으로 하고, 同條同項第1號·第2號 및 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同項에 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 第37條第2項, 第42條, 第47條第11項 내지 第13項, 第50條, 第50條의 2, 第50條의 3, 第51條 또는 第53條第4項에 規定된 이외의 文書·圖畫 기타 宣傳施設을 選擧運動을 위하여 작성·사용한 者
2. 第47條第7項 및 第8項, 第51條의 2, 第52條第1項, 第52條의 2, 第53條第1項·第3項 및 第5項, 第61條, 第61條의 2, 第62條, 第65條, 第67條의 2 또는 第7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4條, 第18條第8項, 第26條第2項, 第100條第6項, 第106條第7項(不在者投票參觀人을 포함한다), 第107條第2項 내지 第4項, 第108條第1項·第3項 및 第5項, 第110條第3項 및 第4項 또는 第120條

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第1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不應한 者

第164條第1項중 "150萬원"을 "300萬원"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7年"을 "6年"으로, "250萬원"을 "600萬원"으로 하며, 同條第3項을 削除한다.

第165條第1項중 "250萬원"을 "500萬원"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100萬원"을 "200萬원"으로 한다.

第166條第1項 및 第2項중 "10萬원"을 "100萬원"으로 하고, 同條에 第3項내지 第6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管轄稅務署長에게 移牒하고 管轄稅務署長은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167條중 "150萬원"을 "300萬원"으로 한다.

第167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67條의 2(自首者에 대한 特例) 第141條第1項·第142條第1項 또는 第16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중 金錢·物品 기타 이익등을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約束받은 者(候補者와 그 家族· 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會計責任者·選擧運動員·演說員·參觀人·政黨의 幹部 및 詐僞의 방법으로 이익등을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한 者를 제외한다)가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免除한다.

第168條중 "30萬원이상의 罰金刑에 處하게 된"을 "150萬원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은"으로 한다.

第170條중 "3月"을 "6月"로, "1年"을 "3年" 으로 한다.

第171條의 2 내지 第171條의 4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71條의 2(選擧犯의 裁判期間) 選擧犯과 그 共犯에 관한 裁判은 다

른 裁判에 우선하여 신속히 裁判하여야 하며, 裁判의 宣告는 第1審에서는 公訴가 제기된 날부터 6月이내에, 第2審 및 第3審에서는 前審의 判決의 宣告가 있은 날부터 각각 3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第171條의 3(不法施設物등에 대한 代執行) ①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한 壁報, 政見·政策集, 小型印刷物, 懸垂幕 기타 宣傳物이나 類似機關 또는 施設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貼付등의 중지 또는 撤去·收去·閉鎖등을 命할 수 있으며, 이에 不應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에 의한 代執行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代執行에 따른 費用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6條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寄託金중에서 控除하되 寄託金이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은 우선 國庫에서 支出한 후 行政代執行法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171條의 4(不法宣傳物의 郵送中止) ①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第159條 또는 第161條의 2의 規定에 해당하는 犯罪의 嫌疑가 있는 宣傳物이 郵送중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해 郵便局長에게 郵送中止를 요청할 수 있다.

②郵遞局長이 第1項의 郵送中止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郵便物의 郵

送을 즉시 中止하고, 發送人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發送人의 住所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發送郵遞局 揭示板에 郵送中止의 사실을 公示하여야 한다.

③各級選擧管理委員會가 郵送中止를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搜査機關에 調査를 의뢰하거나 告發하고 해당 郵便物의 押收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경우 搜査機關은 刑事訴訟法 第207條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해당 郵便物에 대한 押收令狀의 발부여부를 해당 選擧管理委員會 및 郵遞局長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이 期間내에 押收令狀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郵遞局長은 즉시 그 郵便物의 郵送中止를 解除하여야 한다.

⑤郵遞局長이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요청에 의하여 郵便物의 郵送을 中止한 경우에는 郵便法 第50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72條중 "一般職國家公務員의 正規의 勤務時間중에"를 "公休日에 불구하고 一般職國家公務員의 平日의 正規勤務時間중에"로 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公務員등의 立候補)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실시하는 大統領選擧에 있어 第30條第1項第5號의 改正規定에 해당하는 者로서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選擧日公告日까지 그 職에서 解任되어야 한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진행중인 裁判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진행중인 選擧犯의 裁判에 관하여는 第171條의2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공백

新 · 舊條文對比表

現 行	改 正 案
(新 設)	第4條의 2(言論機關의 公正報道 義務) 放送 · 新聞 · 雜誌 기타의 刊行物을 경영 · 編輯 · 取材 · 執筆 · 報道하는 者가 選擧에 관하여 報道 · 論評을 하는 때에는 表現의 自由를 濫用하여 選擧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11條(選擧權이 없는 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選擧權이 없다.	第11條(選擧權이 없는 者) ----------
1.~2.(생략)	1.~2.(現行과 같음)
3. 選擧犯으로서 5萬원이상의 罰金刑을 받은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나,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免除된 후 4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3.---------- 100萬원----------
4. (생략)	4. (現行과 같음)
第12條(被選擧權이 없는 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被選擧權이 없다.	第12條(被選擧權이 없는 者) ----------

1.~2.(생략)	1.~2.(現行과 같음)
3. 選擧犯으로서 5萬원이상의 罰金刑을 받은 후 6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刑의失效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또는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후 6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3. ---------- 100萬원----------
4. (생략)	4. (現行과 같음)
第17條(名簿作成) ①選擧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區廳長·市長·邑長·面長(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選擧日公告日 現在로 그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된 選擧權者를 投票區別로 調査하여 選擧日公告日로부터 7日이내에 選擧人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第17條(名簿作成) ①---------- 選擧日公告日부터 5日이내에 ----------
②選擧人名簿에 登載된 國內居住者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자신이 投票所에서 投票할 수 없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選擧日公告日로부터 7日이내에 區·市·邑·面의 長에게 不在者申告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郵便은	②---------- 選擧日公告日부터 5日이내에 ----------

無料로 한다.	--------
1. 選擧人名簿에 登載된 投票區밖에 長期旅行하는 者	1. ---------- 登載되고 選擧人名簿 作成滿了日 이전부터 住民登錄地인 區·市·郡 밖으로 떠난 者로서 選擧日까지 住民登錄地로 歸還할 수 없는 者
2. 法令에 의하여 營內 또는 艦艇에 長期寄居하는 軍人	2. ----------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
3. (생략)	3. (現行과 같음)
(新 設)	4. 身體에 중대한 障碍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者
(新 設)	5.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기타 選擧日에 選擧事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者
(新 設)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不在者申告書에 不在者投票事由(居所에서 投票하고자 하는 者는 居所投票事由를 말한다)·姓名·住所·居所·性別·生年月日을 기재하고, 第2項第2號·第3號 및 第5號에 해당하는 者는 所屬機關 또는 施設의 長의 확인을 받아

	申告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居所에서 投票할 수 있는 者는 第2項第2號에 規定된 者중 不在者投票所에 가서 投票할 수 없는 僻奧地 또는 艦艇에 勤務하는 者로서 그 所屬機關의 長이 不在者申告書에 居所에서 投票할 者임을 확인한 者와 第2項第4號에 規定된 者(이하 "居所投票者"라 한다)에 한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때에는 區·市·邑·面의 長은 選擧人名簿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不在者申告人名簿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때에는 區·市·邑·面의 長은 不在者申告書의 申告事項를 확인한 후 정당한 不在者申告인 때에는 選擧人名簿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不在者申告人名簿를 따로 작성하여야 하되, 不在者申告人이 居所投票者인 때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생략)	⑤(現行 第4項과 같음)
⑤(생략)	⑥(現行 第5項과 같음)
⑥(생략)	⑦(現行 第6項과 같음)
⑦(생략)	⑧(現行 第7項과 같음)
⑧1投票區의 選擧權者의 數가 2千人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選擧人名簿	⑨---------- 1千人을 ----------

를 2個로 分綴할 수 있다.	-- 選擧人數 1千人을 單位로 하여 ----
(新 設)	⑩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人名簿와 不在者申告人名簿의 작성은 電算組織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性別 및 生年月日의 기재는 住民登錄番號의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第18條(名簿作成의 監督) ①選擧人名簿의 작성에 관하여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이를 監督한다.	第18條(名簿作成의 監督등) ①----------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및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
②~③(생략)	②~③(現行과 같음)
④區·市·邑·面의 長과 選擧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정당한 이유없이 選擧人名簿作成에 관하여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指示·命令 또는 是正要求에 不應하거나 그 職務를 태만히 하거나 違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直近上級選擧管理委員會는 任免權者에게 그 替任을 요구할 수 있다.	④----------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
⑤(생략)	⑤(現行과 같음)

(新 設)	⑥區·市·邑·面의 長이 選擧人名簿를 작성하는 때에는 大統領候補者(이하 "候補者"라 한다) 또는 選擧事務長이나 選擧連絡所長이 選擧權者중에서 지명하는 者(이하 "選擧人名簿作成立會人"이라 한다)를 邑·面·洞마다 각 1人씩 立會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選擧人名簿作成立會人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 設)	⑦區·市·邑·面의 長은 選擧人名簿作成立會人이 選擧人名簿作成에 관하여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是正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是正하여야 한다.
(新 設)	⑧選擧人名簿作成立會人은 選擧人名簿作成事務를 방해하거나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에 대한 支持 또는 反對를 勸誘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選擧人名簿作成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選擧人名簿作成立會人임을 표시하는 標識 이외에는 腕章·胸章 기타 選擧

	에 관한 어떠한 標識도 附着·着用 또는 휴대할 수 없다.
(新 設)	⑨選擧人名簿作成立會人의 申告期間·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名簿閱覽) ①區·市·邑·面의 長은 選擧人名簿作成滿了日의 다음 날로부터 5日間 場所를 정하여 選擧人名簿를 閱覽하게 하여야 하며, 選擧權者의 편의를 위하여 閱覽期間중 區·市에 있어서는 統別, 邑·面에 있어서는 里·洞別의 選擧人名簿謄本을 統·里·洞의 長이 지정하는 場所에 비치하여 供覽하게 하여야 한다.	第19條(名簿閱覽) ①---------- 다음 날부터 3日間---------- 里別---------- 統·里의 長----------
②~③(생략)	②~③(現行과 같음)
(新 設)	第21條의 2(名簿漏落者의 구제) ①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期間 경과후 選擧人名簿確定日前日까지 區·市·邑·面의 長의 착오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選擧權者가 選擧人名簿에 漏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選擧權者 또는 區·市·邑·面의 長은 住民登錄票謄本등 소

	명자료를 첨부하여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選擧人名簿登載申請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그 申請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審査·決定하되, 그 申請이 이유있다고 決定한 때에는 즉시 관계 區·市·邑·面의 長에게 통지하여 選擧人名簿를 修正하게 하고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申請人과 관계 區·市·邑·面의 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22條(選擧人의 住所移轉) ①選擧人名簿에 登載된 選擧人이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 이후에 住所를 당해 投票區 밖으로 移轉한 때에는 그 選擧人名簿確定日까지 前住所地를 관할하는 區·市·邑·面의 長에게 退去申告를 하고 選擧人名簿登載確認書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不在者申告人名簿에 登載된 者는 住所移轉의 申告를 할 수 없다.	第22條(選擧人의 住所移轉) ①-------選擧人名簿確定日前日----------轉出申告----------

②(생 략)	②(現行과 같음)
③第2項의 選擧人名簿登載確認書를 교부받은 選擧人은 選擧人名簿確定日까지 轉入한 住所地를 관할하는 區·市·邑·面의 長에게 移轉申告를 하여야 한다.	③----------選擧人名簿確定日前日----------
④(생 략)	④(現行과 같음)
第24條(名簿의 再作成) ①天災·地變 기타의 事故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區·市·邑·面의 長은 다시 選擧人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第17條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송부한 選擧人名簿謄本이 있는 때에는 選擧人名簿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選擧人名簿謄本에 의한다.	第24條(名簿의 再作成) ①----------第17條第8項----------
②(생략)	②(現行과 같음)
第25條(名簿寫本의 교부) ①區·市·邑·面의 長은 당해 開票區의 選擧連絡所責任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選擧人名簿(不在者申告人名簿를 포함한다) 寫本 1通을 選擧人名簿確定후 지체없이 申請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第25條(名簿寫本의 교부) ①---------- 選擧連絡所長----------작성된 選擧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 1通을 그 名簿가 작성된 후----------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人名簿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人名簿

寫本의 交付申請은 選擧人名簿確定日전 7日까지 당해 區·市·邑·面의 長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申請者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選擧人名簿寫本作成費用을 申請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및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의 交付申請은 選擧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 작성마감일의 前日까지 당해 區·市·邑·面의 長에게 하여야 한다.
③區·市·邑·面의 長은 選擧人名簿作成完了日후 5日이내에 選擧人名簿寫本作成費用을 決定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③區·市·邑·面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人名簿 및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을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내용과 作成費用을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통보하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그 費用을 區·市·邑·面의 長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新 設)	④選擧人名簿 및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의 交付申請과 費用納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6條(登錄) ①大統領候補者(이하 ("候補者"라 한다)의 登錄은 選擧日公告日로부터 7日이내에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申請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政黨이 추천하는 때에는 1人의 候補者에 대하여 政黨의 推薦書와	第26條(登錄) ①候補者의 登錄은 選擧日公告日부터 5日이내에----------

本人의 承諾書를 첨부하고 5千萬원을 寄託하여야 하며, 政黨의 黨員이 아닌 候補者(이하 "無所屬候補者"라 한다)는 選擧權者 5千人이상 7千人 이하가 選擧日公告日로부터 記名·捺印(拇印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推薦狀(單記 또는 連記로 하며 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첨부하고 1億원을 寄託하여야 한다.	------ 承諾書를,---------- ---------- ---------- ---------- ------記名·捺印---------- ---------- ---------- ---------- 첨부하고, 候補者마다 3億원을----------.
(新 設)	②第1項의 경우에 無所屬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檢印하여 교부하는 推薦狀을 사용하여 選擧權者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檢印되지 아니한 推薦狀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選擧權者 7千人을 초과하여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생략)	③(現行 第2項과 같음)
③(생략)	④(現行 第3項과 같음)
④(생략)	⑤(現行 第4項과 같음)
⑤(생략)	⑥(現行 第5項과 같음)
⑥候補者가 辭退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때 또는 候補者의 得票數가 有效投票總數의 100分의 5를 초과하	⑦政黨 또는 候補者의 寄託金은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選擧人名簿 및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作成費用과

지 못한 때에는 그 政黨 또는 候補者의 寄託金은 國庫에 귀속된다.	第171條의 3의 規定에 의한 不法施設物등에 대한 代執行費用을 控除한 후 그 殘額은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반환 또는 國庫에 귀속된다. 1. 候補者의 得票數가 有效投票總數의 100分의 7이상이거나 候補者가 當選 또는 死亡한 때에는 選擧日 후 30日이내에 寄託者에게 반환한다. 2. 候補者의 得票數가 有效投票總數의 100分의 5를 초과하였으나 100分의 7미만인 때에는 第43條第8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에서 부담하는 候補者 및 演說員의 演說費用(이하 "國庫負擔演說費用"이라 한다)을 控除하여 당해 放送社에 납부한 후 그 殘額은 選擧日 후 30日이내에 寄託者에게 반환한다. 3. 候補者가 辭退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때 또는 候補者의 得票數가 有效投票總數의 100分의 5를 초과하지 못한 때에는 國庫負擔演

	說費用을 控除하여 당해 放送社에 납부한 후 그 殘額은 國庫에 귀속된다.
⑦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에 귀속되지 아니한 寄託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選擧日후 30日이내에 寄託者에게 이를 반환한다. 候補者가 死亡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⑧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寄託金에서 부담하는 國庫負擔演說費用이 寄託金殘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政黨 또는 候補者가 그 告知를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期間안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 國庫에서 支出한 후 管轄稅務署長에게 委託하여 管轄稅務署長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하여 國庫에 納入하도록 하여야 한다.
(新 設)	⑨第1項의 寄託金은 滯納處分이나 強制執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⑧候補者의 登錄申請書·政黨의 推薦書 및 選擧權者의 推薦狀의 書式과 寄託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⑩---------- 推薦狀의 書式·檢印 및 교부와 寄託金의 寄託·반환 및 國庫歸屬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
第28條(登錄無效) ①候補者登錄후에	第28條(登錄無效) ①----------

候補者가 被選擧權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第2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된 때,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이 解散된 때 또는 候補者가 黨籍을 離脫·變更한 때에는 그 登錄은 無效로 한다.	---------- 第26條 또는 第30條第1項----------
②(생략)	②(現行과 같음)
第30條(公務員등의 立候補)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의 任期滿了日전 180日까지(再選擧, 大統領이 闕位된 때의 選擧 또는 選擧를 연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選擧日公告日로부터 5日이내) 그 職에서 解任되어야 한다. 그러나 大統領權限代行者와 國會議員이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0條(公務員등의 立候補) ①----------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1. 國家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1. ---------- 地方公務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
2.~4.(생략)	2.~4.(現行과 같음)
5. 農業協同組合·水産業協同組合·畜産業協同組合의 任·職員	5.---------- 畜産業協同組合·農地改良組合·

	山林組合·葉煙草生産協同組合·人蔘協同組合(이들 組合의 中央會 및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常勤 任·職員과 이들 組合의 中央會長 및 聯合會長
6. (생략)	6. (現行과 같음)
②(생략)	②(現行과 같음)
第31條(候補者辭退의 申告) 候補者가 立候補를 辭退하고자 하는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되,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의 경우에는 所屬政黨의 辭退承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31條(候補者辭退의 申告) ---------- 本人이 직접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가서 ---------- 候補者(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의 ----------
第33條(定義) ①(생략)	第33條(定義) ①(現行과 같음)
②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開陳·意思의 표시와 立候補를 위한 準備行爲는 選擧運動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立候補를 위한 準備行爲 및 選擧運動을 위한 準備行爲와 政黨의 통상적인 活動은 ---------
第36條(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 ① 政黨·候補者·選擧事務長·演說員·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의 責任者 또는 候補者와 동일한 政黨에 소속하는 選擧事務員이 아닌 者는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無所屬	第36條(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 ① ----------選擧連絡所長·選擧運動員 또는 演說員---------- 다만, 候補者

候補者의 選擧事務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配偶者, 候補者 및 그 配偶者의 直系尊·卑屬과 兄弟姉妹, 候補者의 直系卑屬 및 兄弟姉妹의 配偶者(이하 "家族"이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大統領의 選擧權이 없는 者와 第30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選擧事務長, 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의 責任者, 選擧費用의 支出에 관한 責任者(이하 "會計責任者"라 한다) 또는 選擧事務員이나 演說員이 될 수 없다. 다만, 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30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는 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選擧運動員----------, ---------- (但書 削除)
③鄕土豫備軍 小隊長級이상의 幹部 및 里·洞·統·班의 長은 選擧日公告日이전에 그 職에서 解任되지 아니하고는 選擧事務員·演說員 또는 投票參觀人이 될 수 없다.	③鄕土豫備軍의 小隊長級이상의 幹部 및 統·里·班의 長은 大統領의 任期滿了日 100日이전에 그 職에서 解任되지 아니하고는 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選擧運動員·演說員 또는 投票參觀人(不在者投票參觀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될 수 없다.
(新 設)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任된 者는 選擧日후 6月이내에는 從前의 職에 復職할 수 없다.

第37條(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의 設置) ①(생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事務所와 連絡所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看板을 달 수 있다.	第37條(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의 設置) ①(現行과 같음) ②----------看板을, 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建物 屋上 또는 外壁面에는 候補者의 記號(第9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投票用紙에 印刷할 候補者의 掲載順位의 番號를 말한다. 이하 같다)·寫眞·所屬政黨名과 選擧口號 기타 候補者 또는 政黨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宣傳懸板을, 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入口 또는 10미터안의 場所에는 候補者의 政見·政策 기타 候補者 또는 政黨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宣傳物을 貼付·게시하는 弘報用 掲示板을 設置할 수 있다.
(新 設)	③第2項의 宣傳懸板 및 弘報用 掲示板의 標識·規格·數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38條(選擧事務所·連絡所와 그 責任者의 申告) ①政黨 또는 候補者는	第38條(選擧事務所·連絡所의 設置申告) ①----------

選擧事務所 또는 連絡所를 設置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所在地와 責任者의 姓名·住所를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에 變更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는 候補者와 동일한 政黨에 소속한 者라야 한다. 다만, 無所屬候補者의 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의----------. (削 除)
第39條(類似機關의 設置禁止) ①第37條에 의한 選擧事務所와 連絡所 이외에는 候補者를 위하여 選擧推進委員會·後援會 기타 名稱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機關·團體 또는 施設을 設置할 수 없다. 그러나 政黨의 中央黨, 서울特別市·直轄市·道支部, 地區黨에 設置되는 各 1個의 選擧對策機構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9條(類似機關의 設置禁止) ①----------候補者 또는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後援會·休憩所----------市·道支部 또는----------選擧對策機構와 政治資金에관한 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後援會는----------
②(생략)	②(現行과 같음)
第40條(選擧事務長·選擧事務員·演說員등) ①政黨 또는 候補者는 選擧事	第40條(選擧事務長·選擧運動員·演說員등) ①----------選擧

務長 1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事務所에 選擧事務長 1人을, 連絡所에 選擧連絡所長 1人을 두어야 한다.
②選擧事務長은 選擧에 관한 事務의 처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選擧事務所에 있어서는 100人이내의, 連絡所에 있어서는 連絡所에 40人이내와 投票區마다 3人이내의 選擧事務員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演說會의 告知壁報를 貼付하기 위한 勞務員은 選擧事務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 ----------選擧運動員----------選擧運動員----------.
③(생략)	③(現行과 같음)
④選擧事務長과 演說員은 候補者와 동일한 政黨에 소속한 者라야 한다. 다만, 無所屬候補者의 選擧事務長과 演說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削 除)
⑤政黨·候補者·選擧事務長 또는 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는 選擧事務長·演說員 또는 選擧事務員을 選任하였거나 解任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⑤----------選擧連絡所長은 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選擧運動員 또는 演說員 ----------.
⑥選擧管理委員會가 第5項의 申告를 받은 때에는 關係選擧管理委員會에	(削 除)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⑦選擧事務長·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演說員 및 選擧事務員은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에서 발행하는 身分證明書를 휴대하여야 하며, 解任된 때에는 즉시 그 身分證明書를 반환하여야 한다.	⑦----------選擧連絡所長·選擧運動員 및 演說員 ----------選擧運動時 항상 달고 있어야 하며,----------이를----------.
⑧(생략)	⑧(現行과 같음)
第41條(選擧關係者의 身分保障) 候補者·選擧事務長·會計責任者·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投票 및 開票參觀人·演說員 및 選擧事務員의 身分保障에 관하여는 選擧管理委員會法 第13條를 準用한다.	第41條(選擧關係者의 身分保障) 候補者, 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 會計責任者, 選擧運動員, 演說員, 投票·不在者投票 및 開票參觀人과 候補者의 家族----------.
第43條(放送施設을 이용한 演說) ①候補者와 候補者가 지명한 演說員은 政見 또는 所屬政黨의 政綱·政策·選擧綱領등을 발표하기 위하여 텔레비젼 및 라디오放送施設(이하 "放送施設"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演說을 할 수 있다.	第43條(放送施設을 이용한 演說) ①----------候補者의 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政策과 候補者 또는 政黨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텔레비전----------.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演說의 경우에 候補者와 演說員은 각각 텔레비젼 및 라디오 放送施設을 各 5回(再	②----------텔레비전----------

放送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時間은 每回 20分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利用回數의 계산에 있어서 하나의 텔레비젼 또는 라디오 放送施設을 선정하여 당해 放送網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回로 본다.	----------텔레비전----------.
③~⑦(생략)	③~⑦(現行과 같음)
⑧放送施設을 이용하여 演說하는 때의 費用은 당해 放送施設을 이용한 政黨 또는 候補者가 부담한다. 다만, 候補者와 演說員이 텔레비젼 또는 라디오 放送施設을 이용한 演說費用중 各 1回의 費用은 國庫에서 부담한다.	⑧----------다만, 候補者와 演說員이 텔레비전 및 라디오放送施設을 이용한 演說費用중 候補者가 행한 各 3回의 演說費用과 演說員이 행한 各 2回의 演說費用은 國庫에서 부담한다.
(新 設)	⑨有線放送管理法에 의한 中繼有線放送社를 경영하는 者가 第1項의 放送演說을 中繼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든 候補者와 演說員에게 公平하여야 한다.
⑨(생략)	⑩(現行 第9項과 같음)
第44條(放送施設을 이용한 對談·討論) ①~②(생략)	第44條(放送施設을 이용한 對談·討論) ①~②(現行과 같음)

③第1項의 對談 또는 討論은 放送施設을 경영하는 者가 主管하여 행하되, 對談 또는 討論을 하고자 하는 政黨 또는 候補者와 協議하여 決定하여야 하며, 그 時間은 每回 40分을 초과할 수 없다.	③----------2時間----------.
④候補者와 演說員이 각각 對談 또는 討論에 참가할 수 있는 회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에 各 3回이내로 한다.	④----------텔레비전----------.
⑤第3項의 對談 또는 討論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⑥(생략)	⑥(現行과 같음)
⑦第43條第2項 後段의 規定은 放送施設을 이용한 對談 또는 討論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⑦第43條第2項 後段 및 第9項----------.
⑧(생략)	⑧(現行과 같음)
第45條(經歷放送)	第45條(經歷放送)
①~②(생략)	①~②(現行과 같음)
(新 設)	③第43條第2項 後段 및 第9項의 規定은 經歷放送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 設)	第45條의 2(放送廣告) ①政黨 또는 候

	補者는 候補者의 經歷·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政策과 候補者 또는 政黨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選擧運動期間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별로 各 5回 이내에서 廣告할 수 있으며 廣告時間은 1回에 1分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경우 第43條第2項 後段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를 실시하는 放送施設의 經營者는 放送廣告의 日時와 廣告內容등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放送廣告는 放送法第35條第2項 및 韓國放送廣告公社法第15條本文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④第1項의 放送廣告는 各 政黨 및 候補者에게 公正하여야 한다.
第46條(新聞廣告) ①政黨 또는 候補者는 政見 또는 所屬政黨의 政綱·政策·選擧綱領등을 各 日刊新聞에 3回에 한하여 廣告할 수 있다.	第46條(新聞廣告) ①----------政治·經濟·社會·文化·外交·國防 기타의 國政에 관한 政見·政策과 候補者 또는 政黨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選擧運動期間중 各 日

	刊新聞에 各 4回이내에서 ---------.
②(생략)	②(現行과 같음)
③新聞廣告의 規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
第47條(演說會) ①政黨·候補者·選擧事務長 또는 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는 選擧運動期間中 選擧運動을 하기 위하여 演說會를 開催할 수 있다.	第47條(演說會) ①政黨·候補者·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은 選擧運動期間중 選擧運動을 하기 위하여 演說會를 開催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演說會"라 함은 사전에 일정한 場所와 時間을 정하여 多數人을 集合하게 하여 실시하는 政見發表會·座談會 및 討論會등을 말한다.	②第1項의 演說會는 開票區별로 5回이내 開催하되 인접한 2이상의 開票區의 演說會를 한 場所에서 共同開催할 수 있다. 演說會를 共同開催하는 때에는 共同開催하는 開票區마다 各 1回의 演說會를 開催한 것으로 본다.
③演說會를 開催하고자 하는 者는 開催日前日까지 候補者가 참가하는 演說會(이하"候補者演說會"라 한다)의 경우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候補者가 참가하지 아니하는 演說員의 演說會(이하"演說員 演說會"라 한다)의 경우에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③第1項의 "演說會"라 함은 사전에 일정한 場所와 時間을 정하여 多數人을 集合하게 하여 실시하는 政見發表會·座談會 및 討論會등을 말한다.
	④演說會를 開催하고자 하는 者는 開催日前日까지 管轄區·市·郡選擧

바에 의하여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申告가 동일한 場所에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당해 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順位를 調整하여야 한다.

⑤演說會의 場所사용은 1回에 5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⑥第1項의 演說會에 있어서는 每回 4人에 한하여 演說을 할 수 있다.

⑦候補者 演說會는 市·道別로 3回를 초과할 수 없으며, 演說員 演說會는 區·市에 있어서는 洞마다 1回를, 郡에 있어서는 邑·面마다 1回를 초과할 수 없다.

⑧候補者는 演說員 演說會에 일시 참석하여 자기의 所見을 발표할 수 있다.

⑨演說會에서는 錄音器에 의한 政見發表 또는 演說을 할 수 있다.

⑩演說會를 開催하는 者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演說會場의 標識를 할 수 있다.

⑪第7項의 候補者 演說會의 告知를 위하여 사용될 壁報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演說會를 共同開催하는 때에는 各 開票區를 관할하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演說會開催의 申告를 하는 때에는 적정한 數의 秩序維持人을 申告하여야 하며, 秩序維持人은 秩序維持人임을 표시하는 腕章을 着用하고 演說會場의 秩序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第4項의 申告가 동일한 場所에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順位를 調整하여야 한다.

⑦演說會의 場所使用은 1回에 5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演說會를 共同開催하는 때에는 1回에 6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⑧第1項의 演說會에 있어서는 候補者외에 每回 4人에 한하여 演說을 할 수 있다. 다만, 演說會를 共同開催하는 때에는 候補者외에 每回 7人

理委員會가, 演說員 演說會의 告知를 위하여 사용될 壁報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각각 國庫負擔으로 작성하여 政黨 또는 候補者의 申請에 의하여 교부한다.

⑫第11項의 壁報의 枚數는 演說會 1回에 100枚(候補者 演說會는 開票區마다 100枚)로 하고, 그 規格과 기재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에 한하여 演說을 할 수 있다.

⑨第1項의 演說會場에서 候補者와 演說員은 錄音機 또는 錄畵器(비디오 및 오디오器機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政見發表 또는 演說을 할 수 있다.

⑩第1項의 演說會의 開催時間중에는 演說會場에서 당해 政黨 또는 候補者를 支持·宣傳하는 내용의 노래를 하거나 이를 演說會場에 설치된 擴聲裝置를 사용하여 放送할 수 있다.

⑪演說會를 開催하는 者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演說會場의 標識를 하고 애드벌룬 1個를 설치할 수 있다.

⑫第1項의 演說會의 告知를 위하여 사용될 壁報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國庫負擔으로 작성하여 政黨 또는 候補者의 申請에 의하여 교부한다.

⑬第12項의 壁報의 枚數는 演說會 1回에 200枚(演說會를 共同開催하는 경우 각 開票區마다 200枚)로 하고, 그 規格과 기재사항은 中央選擧管理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⑭演說會를 開催하는 者가 第12項의 告知壁報를 貼付한 때에는 演說會終了후 지체없이 撤去하여야 한다.
第48條(公共施設등의 이용)	第48條(公共施設등의 이용)
①(생략)	①(現行과 같음)
②學校 기타 公共施設의 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申請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目的에 우선하여 그 사용을 許可하여야 하며, 學校에 있어서는 正常的인 授業時間이 아니면 그 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②---------- 許可하되, 모든 候補者에게 균등하게 이용할 機會를 부여하여야 하며,----------.
第50條(記號票등의 配布) ①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는 候補者의 記號·姓名 및 政黨名을 표시한 記號票를 演說會場所에서 配布할 수 있다.	第50條(宣傳物의 着用·휴대등) ①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는 第47條의 演說會場에서 候補者의 記號·姓名·所屬政黨名 또는 寫眞등을 게재한 標識板·標札·어깨띠 또는 手旗를 附着·着用하거나 휴대할 수 있다.
②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는 候補者의 記號·姓名·政黨名 또는 寫眞을 게재할 標識板을 演說會場所에서 휴대할 수 있다.	
③記號票 및 標識板의 規格 기타 필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板·標

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札·어깨띠 및 手旗의 規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新 設)	第50條의 2(政見·政策集의 配付등) ①政黨 또는 候補者는 候補者의 經歷·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政策과 候補者 또는 政黨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政見·政策集을 製作·配付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政見·政策集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70面(표지를 포함한다)이내로 작성하는 1種으로 하되, 그 部數는 世帶數의 10分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第1項의 政見·政策集은 演說會場·選擧事務所·連絡所·政黨의 黨舍·政黨의 所屬黨員集會에서의 配付·街頭配付·戶別投入과 郵便配達에 한하고, 戶別訪問에 의한 配付·新聞揷入에 의한 配付와 揭示·撒布行爲는 할 수 없다. ④第1項의 政見·政策集에는 製作根據, 製作·配付하는 政黨名 또는 候補者 姓名 및 印刷所의 名稱·住

	所·電話番號를 표시하여야 하며, 政黨 또는 候補者가 政見·政策集을 配付하고자 하는 때에는 配付日前日까지 5部를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新 設)	第50條의 3(小型印刷物의 配付등) ① 政黨 또는 候補者는 候補者의 記號·寫眞·姓名·年齡·所屬政黨名·職業·經歷·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政策과 候補者 또는 政黨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小型印刷物을 製作하여 配付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小型印刷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이내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2面이내로 작성하는 小型印刷物(이하 "傳單型 小型印刷物"이라한다) 1種과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20面이내로 작성하는 小型印刷物(이하 "冊子型 小型印刷物"이라 한다) 3種으로 하며, 그 數量은 각각 世帶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第50條의 2第3項 및 第4項의 規定

	은 小型印刷物에 이를 準用한다.
第51條(懸垂幕) ①政黨 또는 候補者는 選擧運動을 하기 위하여 區·市에 있어서는 開票區마다 20枚이내의, 郡에 있어서는 邑·面마다 3枚이내의 懸垂幕을 製作하여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檢印을 받아 게시할 수 있다.	第51條(懸垂幕) ①----------管轄洞數에 상당하는 枚數이내의, 郡에 있어서는 邑마다 2枚이내의, 面마다 1枚의----------.
②(생략)	②(現行과 같음)
(新 設)	第51條의2(無所屬候補者의 政黨標榜금지) 無所屬候補者는 特定政黨에 소속함을 標榜할 수 없다.
第52條(脫法方法에 의한 選擧運動의 금지) ①누구든지 選擧運動期間중 政黨 또는 候補者를 支持·추천하거나 反對하는 宣傳行爲를 이 法에 規定된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選擧運動期間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2條(脫法方法에 의한 著述등의 금지) ①----------내용이 일부라도 포함된 著述·演藝·映畵·廣告·寫眞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이 法에 規定된 이외의 방법으로 配付·上演 또는 게시할 수 없다----------
②(생략)	②(現行과 같음)
(新 設)	第52條의2(議政活動報告의 제한) 國會議員 또는 地方議會議員은 選擧日公

	告日부터 選擧日까지에는 歸鄕報告會나 議政報告書(印刷物 또는 錄畵物등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議政活動(地域區活動 기타 議員活動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地域區民에게 보고할 수 없다.
第53條(擴聲裝置와 自動車등의 사용제한)	第53條(擴聲裝置와 自動車등의 사용제한)
①(생략)	①(現行과 같음)
②選擧活動을 위하여 사용되는 自動車·船舶과 擴聲裝置는 開票區마다 各 5台·5隻 또는 2式을 초과할 수 없다.	②----------選擧事務所와 連絡所마다----------.
③(생략)	③(現行과 같음)
④第2項의 自動車·船舶 또는 擴聲裝置에는 選擧運動期間중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標識를 하여야 하며 自動車와 船舶은 그 運行區間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④----------標識을 하여야 하고 그 自動車와 船舶은 運行區間을 제한받지 아니하며,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壁報와 第50條의 3의 規定에 의한 小型印刷物을 附着할 수 있다.
⑤(생략)	⑤(現行과 같음)
⑥政黨 또는 候補者는 演說會를 위	⑥----------

하여 擴聲裝置에 의한 告知를 하고자 할 때에는 告知區域과 時間을 정하여 演說會마다 1回에 한하여 候補者演說會에 있어서는 당해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演說員演說會에 있어서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擴聲裝置에 의한 告知를 申請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車輛은 演說會 1回에 2臺에 한하며 告知區域은 候補者演說會에 있어서는 당해 市·道로 하고, 演說員演說會에 있어서는 당해 區·市·郡으로 하며, 演說會의 告知는 關係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職員이 하되, 告知時間과 告知內容이 모든 候補者에 대하여 公平하여야 하며 政黨 또는 候補者가 지명하는 選擧事務員 1人을 立會하게 하여야 한다.

⑦(생략)

(新　設)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告知區域과 時間은 당해 開票區(演說會를 共同開催하는 경우에는 各 開票區를 말한다)안에서 開票區마다 區·市에 있어서는 1時間, 郡에 있어서는 3時間을 초과할 수 없고, 演說會의 告知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選擧運動員----------

⑦(現行과 같음)

第61條의 2(他演說會의 금지) 누구든지 選擧運動期間중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演說會를 제외하고는 多數人을 集會하게 하여 個人政見發表會

	·座談會·討論會·時局講演會 기타의 演說會를 開催할 수 없다.
(新 設)	第61條의3(錄音器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選擧運動期間중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錄音器 또는 錄畵器를 사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新 設)	第61條의4(電報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選擧運動期間중 電信·電報 또는 書信을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第62條(公務員등의 出張制限) 選擧運動期間중 公務員과 政府投資機關의 任·職員은 正常的인 業務 이외의 出張을 할 수 없다.	第62條(公務員등의 選擧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公務員(國會議員, 地方議會議員, 國會議員의 補佐官·秘書官·秘書를 제외한다), 政府 및 地方自治團體의 投資機關(第30條 第1項 第4號 및 地方公企業法 第2條 第1項에 規定된 機關을 말한다)의 任·職員, 統·里·班의 長과 鄕土豫備軍의 小隊長級 이상의 幹部, 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國民運動團體로서 政府의 出捐·補助를 받는 團體(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常勤 任·職員과 이들 團體의

中央會長은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職員 또는 일반인에게 教育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政黨 또는 특정 候補者의 업적을 弘報하는 행위

2. 選擧運動期間중 소속職員 또는 일반인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法令이 정하는 이외의 金品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約束하는 행위. 다만, 冠婚喪祭 기타 儀禮的이거나 職務上의 행위로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選擧運動의 企劃에 참여하거나 그 企劃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4. 政黨 또는 候補者에 대한 選擧權者의 支持度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5. 選擧運動期間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豫算으로 시행하는 事業중 즉시 工事를 진행하지 아니할 事業의 起工式을 거행하는 행위

	6. 選擧運動期間중 正常的 業務이외의 出張
	7. 選擧運動期間중 休暇期間에 그 職務와 관련된 機關이나 施設을 訪問하는 행위
第63條(戶別訪問禁止)	第63條(戶別訪問禁止)
①(생략)	①(現行과 같음)
(新 設)	②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冠婚喪祭儀式이 거행되는 場所와 道路·市場·店鋪·茶房·待合室 기타 多數人이 왕래하는 公開된 場所에서 政黨 또는 候補者에 대한 支持를 호소할 수 있다.
②(생략)	③(現行 第2項과 같음)
第65條(人氣投票등의 금지) 누구든지 選擧에 관하여 當選되거나 되지 아니함을 豫想하는 人氣投票나 模擬投票를 할 수 없다.	第65條(輿論調査의 結果公表禁止)
	①누구든지 選擧日公告日부터 選擧日까지에는 選擧에 관하여 政黨에 대한 支持度나 當選人을 豫想하게 하는 輿論調査(人氣投票나 模擬投票를 포함한다)의 經緯와 그 결과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投票用紙와 유사한 模型에 의한 방

	법으로 하거나,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또는 政黨이 그 名義를 밝혀 할 수 없다.
第66條(飮食物提供禁止) 누구든지 選擧運動을 위하여 어떠한 場所에서나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飮食物을 제공할 수 없다.	(削 除)
第67條(騷亂行爲의 금지) 누구든지 選擧運動을 위하여 隊伍를 組織하여 街路를 行進하거나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第67條(行列등의 금지) ----------.
(但書 新設)	다만, 第47條의 演說會場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 設)	第67條의 2(演說會場에서의 騷亂行爲의 금지) 누구든지 第47條의 演說會場에서 暴行·脅迫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演說會場의 秩序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거나 횃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演壇과 그 주변의 照明을 위하여 횃불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 設)	第67條의 3(街頭放送의 금지) 누구든지 第5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演說

	會의 告知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擧運動을 위하여 街頭放送을 할 수 없다.
(新 設)	第67條의 4(有線放送의 금지) 누구든지 第43條第9項, 第44條第7項 및 第4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中繼放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擧運動期間중 有線放送(構內放送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第70條(寄附行爲의 제한) ①候補者 또는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任期滿了日전 180日(再選擧·大統領이 闕位된 때의 選擧 또는 選擧를 延期한 경우에 있어서는 選擧日公告日. 이하 같다)부터 選擧日까지의 사이에는 당해 選擧에 관하여 寄附行爲를 할 수 없다.	第70條(寄附行爲의 제한) ①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 第71條에서 같다) 또는 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 第71條에서 같다)은 大統領任期滿了日전 180日(再選擧·大統領이 闕位된 때의 選擧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事由確定日, 選擧를 延期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延期決定日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候補者登錄을 하기 前까지에는 당해 選擧에 관하여, 候補者登錄이 끝난 때부터 選擧日까지에는 당해 選擧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選擧權者 또는 그 家族 및 그들의 모임이나 行

	事 또는 機關·團體에 일체의 寄附行爲를 할 수 없다.
②政黨, 候補者의 父母·配偶者·子 및 兄弟姉妹(이하 "家族"이라 한다), 選擧事務長, 會計責任者, 演說員, 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 選擧事務員 또는 候補者와 관계있는 會社 기타 法人·團體는 大統領任期滿了日전 180日부터 選擧日까지의 사이에 당해 選擧에 관하여 名稱如何를 불문하고 候補者가 하는 것으로 推定될 수 있는 방법으로 寄附行爲를 할 수 없다.	②候補者의 家族, 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 會計責任者, 選擧運動員, 演說員----------당해 選擧에 관하여 選擧權者 또는 그 家族 및 그들의 모임이나 行事 또는 機關·團體에 名稱如何를 불문하고 候補者 또는 그 所屬政黨이 하는 것으로 推定될 수 있는 방법이나 候補者 또는 그 所屬政黨의 名義를 밝혀 寄附行爲를 할 수 없으며, 당해 選擧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候補者 또는 政黨名義로 寄附行爲를 하는 것은 당해 選擧에 관하여 候補者 또는 政黨이 하는 것으로 推定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본다.
③政黨·候補者 또는 그 家族, 選擧事務長, 會計責任者, 演說員, 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 또는 選	③第1項 및 第2項에서 "寄附行爲"라 함은 金錢·花環·달력·서적·飮食物등 金品의 제공, 物品이나 施

擧事務員이 大統領의 任期滿了日전 180日부터 選擧日까지의 사이에 당해 選擧에 관하여 選擧人 또는 그 家族에 대하여 金錢의 제공, 物品이나 施設의 無償貸與나 無償讓渡, 債務의 免除나 輕減 기타의 利益을 제공하는 행위등은 이를 寄附行爲로 본다.	設의 無償貸與· 無償讓渡, 債務의 免除· 輕減, 入黨願書와 교환하거나 入黨願書를 받아주는 代價의 제공, 觀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演說會·政黨集會에 참석하는 者 또는 이들 集會에 聽衆을 動員해 주는 者에 대한 代價의 제공, 交通施設편의의 제공, 宗敎·社會團體등에 金品의 제공 및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와 그 제공을 約束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에 候補者登錄時까지의 儀禮的 또는 職務上의 행위는 이를 寄附行爲로 보지 아니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政黨, 候補者 또는 그 家族, 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 會計責任者, 選擧運動員, 演說員 또는 候補者와 관계있는 會社 기타의 法人·團體가 행하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를 寄附行爲로 보지 아니한다. 1. 冠婚喪祭의 儀式이 거행되는 場所를 訪問하여 儀禮的인 범위안에서 祝儀金 또는 弔意金을 제공하는 행위

2. 選擧事務所·連絡所 또는 政黨의 黨舍를 訪問하는 者나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政黨活動으로서의 團合大會와 國會議員選擧法 第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國會議員 또는 地方議會議員의 職務上 행위로서의 歸鄕報告會에 참석한 者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茶菓나 飮料(酒類를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3. 政黨의 創黨大會·改編大會 및 選擧日公告日전에 政黨의 中央黨이 행하는 黨員硏修敎育에서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食事·茶菓나 飮料(酒類를 제외한다) 또는 敎材(膳物이나 紀念品을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4. 奬學財團이 장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奬學金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奬學金의 금액과 대상·지급방법 등을 확대 변경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기타 儀禮的이거나 職務上의 행위로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행위

第71條(寄附의 勸誘·요구등의 금지) 누구든지 選擧에 관하여 政黨·候補者 또는 그 家族·選擧事務長·會計責任者·演說員·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選擧事務員 또는 候補者와 관계있는 會社등으로부터 寄附를 받거나 寄附를 勸誘 또는 요구할 수 없다.	第71條(寄附의 勸誘·요구등의 금지) ----------選擧連絡所長·會計責任者·選擧運動員·演說員---------.
第73條(施設物設置등의 금지) 누구든지 選擧運動期間중 選擧運動을 위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懸垂幕·立看板·廣告塔·廣告板·標札등을 設置·게시하거나 着用할 수 없다.	第73條(施設物設置등의 금지) ----------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방법으로라도----------花環 기타의 施設 또는 물건을 設置·진열·게시·휴대하거나 標札등 着用物을 着用 또는 印刷物을 製作·配布할 수 없다.
第74條(自動車 위에서의 選擧運動 금지) 누구든지 演說會場 이외의 場所에서 自動車에 乘車하여 擴聲裝置를 이용한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第74條(自動車 위에서의 選擧運動 금지) 누구든지 自動車에 乘車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第47條의 演說會場에서의 정지된 自動車 위에서 演說을 하거나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5條(新聞등에 의한 廣告의 금지) 누구든지 第43條·第44條·第46條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擧運動期間중 選擧運動을 위하여 放送施設 또는 新聞·雜誌 기타의 刊行物을 통하여 廣告할 수 없다.	第75條(新聞등에 의한 廣告의 금지) ----------第45條의 2 및 第46條----------
第77條(交通施設 편의제공의 금지)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選擧運動의 目的으로 選擧人에 대하여 自動車 기타의 交通施設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	(削 除)
第78條(選擧日후 答禮禁止) 누구든지 選擧日후에 當選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選擧人에게 祝賀·慰勞 기타의 饗應을 제공할 수 없다.	第78條(選擧日후 答禮禁止) ----------祝賀·慰勞의 饗應 기타의 이익----------.
第79條(定義·부담) ①다음 各號의 經費는 政黨 또는 候補者가 부담한다.	第79條(定義·부담) ①----------.
1. (생 략)	1. (現行과 같음)
2. 選擧事務長·會計責任者·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演說員 및 選擧事務員의 手當과 實費補償	2. ----------選擧連絡所長·會計責任者·選擧運動員 및 演說員의 實費補償
3.~4. (생 략)	3.~4. (現行과 같음)
5. 投票參觀人·開票參觀人의 手當	5. 投票參觀人의 手當

第71條(寄附의 勸誘·요구등의 금지) 누구든지 選擧에 관하여 政黨·候補者 또는 그 家族·選擧事務長·會計責任者·演說員·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選擧事務員 또는 候補者와 관계있는 會社등으로부터 寄附를 받거나 寄附를 勸誘 또는 요구할 수 없다.	第71條(寄附의 勸誘·요구등의 금지) ----------選擧連絡所長·會計責任者·選擧運動員·演說員---------.
第73條(施設物設置등의 금지) 누구든지 選擧運動期間중 選擧運動을 위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懸垂幕·立看板·廣告塔·廣告板·標札등을 設置·게시하거나 着用할 수 없다.	第73條(施設物設置등의 금지) ----------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방법으로라도----------花環 기타의 施設 또는 물건을 設置·진열·게시·휴대하거나 標札등 着用物을 着用 또는 印刷物을 製作·配布할 수 없다.
第74條(自動車 위에서의 選擧運動 금지) 누구든지 演說會場 이외의 場所에서 自動車에 乘車하여 擴聲裝置를 이용한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第74條(自動車 위에서의 選擧運動 금지) 누구든지 自動車에 乘車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第47條의 演說會場에서의 정지된 自動車 위에서 演說을 하거나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5條(新聞등에 의한 廣告의 금지) 누구든지 第43條·第44條·第46條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擧運動期間중 選擧運動을 위하여 放送施設 또는 新聞·雜誌 기타의 刊行物을 통하여 廣告할 수 없다.	第75條(新聞등에 의한 廣告의 금지) ----------第45條의 2 및 第46條----------
第77條(交通施設 편의제공의 금지)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選擧運動의 目的으로 選擧人에 대하여 自動車 기타의 交通施設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	(削 除)
第78條(選擧日후 答禮禁止) 누구든지 選擧日후에 當選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選擧人에게 祝賀·慰勞 기타의 饗應을 제공할 수 없다.	第78條(選擧日후 答禮禁止) ----------祝賀·慰勞의 饗應 기타의 이익----------.
第79條(定義·부담) ①다음 各號의 經費는 政黨 또는 候補者가 부담한다.	第79條(定義·부담) ①----------.
1. (생 략)	1. (現行과 같음)
2. 選擧事務長·會計責任者·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演說員 및 選擧事務員의 手當과 實費補償	2. ----------選擧連絡所長·會計責任者·選擧運動員 및 演說員의 實費補償
3.~4. (생 략)	3.~4. (現行과 같음)
5. 投票參觀人·開票參觀人의 手當	5. 投票參觀人의 手當

과 實費補償	
6. 放送施設利用料(第43條第8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에서 부담하는 費用은 제외한다)·新聞廣告料 및 懸垂幕의 製作·掲示經費	6. ----------,放送廣告料, 新聞廣告料, 懸垂幕·宣傳懸板·弘報用掲示板의 製作·掲示經費와 政見·政策集 및 小型印刷物의 작성·配付에 필요한 經費
7.~8. (생 략)	7.~8. (現行과 같음)
②-③(생 략)	②-③(現行과 같음)
第82條(會計責任者의 選任) ①(생 략)	第82條(會計責任者의 選任) ①(現行과 같음)
②會計責任者는 選擧事務員중에서 2人의 會計事務補助者를 사용할 수 있다.	②----------選擧運動員----------.
第91條(選擧費用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費用)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費用은 이를 이 章의 規定에 의한 選擧費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第91條(選擧費用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費用) ----------.
1. (생 략)	1. (現行과 같음)
2. 選擧人名簿寫本의 交付申請에 소요되는 經費	(削 除)
3.~4. (생 략)	3.~4. (現行과 같음)
第92條(選擧事務關係者등에 대한 報酬	第92條(選擧運動員등에 대한 實費補

및 實費補償) ①選擧事務長·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會計責任者·演說員·選擧事務員과 投票·開票參觀人에 대하여는 日當을 支給하는 이외에 實費를 補償할 수 있다.	償) ①----------選擧連絡所長·會計責任者·選擧運動員 및 演說員에 대하여는----------.
②第1項의 日當 및 實費補償의 종류와 金額에 관하여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정한다.	②------- 實費補償의 종류와 金額은----------.
(新 設)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費補償 외에 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會計責任者·選擧運動員 또는 演說員에 대한 金品 기타 財産上의 이익의 제공은 이를 第70條의 寄附行爲로 보며, 그 제공의 受領 또는 요구는 第71條의 寄附의 受領 또는 요구로 본다.
第93條(選擧日公告) ①任期滿了에 의한 大統領選擧는 大統領의 任期滿了日 70日 내지 40日전에 실시하여야 하되, 選擧日은 選擧日전 30日에 大統令이 公告하여야 한다.	第93條(選擧日公告) ①----------28日----------.
②(생 략)	②(現行과 같음)
第95條(投票所 設置) ①投票所는 投票區마다 設置하되, 投票區選擧管理委	第95條(投票所 設置) ①投票所는 投票區마다 設置하되, 당해 投票區안

員會가 選擧日전 10日까지 그 名稱과 所在地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變更할 수 있다.	에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投票所를 設置할 수 있는 적정한 場所가 없는 때에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決定에 의하여 選擧人이 投票하기 편리한 인접한 다른 投票區에 投票所를 設置할 수 있다.
②第1項 但書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公告하고 選擧人에게 周知시켜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所를 設置한 때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日전 10日까지 그 名稱과 所在地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 地變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變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이를 公告하여 選擧人에게 周知시켜야 한다.
③投票所는 學校, 邑·面 또는 洞·里 事務所와 公會堂중에서 投票하기 편리한 곳에 設置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場所에 設置하는 때에는 管轄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決定에 의하여야 한다.	③----------邑·面·洞 또는 里事務所----------.
④-⑤(생략)	④-⑤(現行과 같음)
⑥政黨·候補者·選擧事務長 또는 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는 投	⑥----------選擧連絡所長은----------

票所의 設備에 대하여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	----------.
⑦(생략)	⑦(現行과 같음)
⑧投票事務從事員은 당해 關係行政機關의 公務員 또는 教育公務員중에서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가 위촉하되 選擧日전 3日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다.	⑧----------당해 區域을 관할하는----------教員----------
(新 設)	第95條의 2(不在者投票所의 設置) 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日전 13日부터 選擧日전 4日까지의 期間(이하 "不在者投票期間"이라 한다)중 당해 事務所 所在地에 不在者申告人(居所投票者를 제외한다)이 投票할 投票所(이하 "不在者投票所"라 한다)를 設置·운영하되, 하나의 區·市·郡안에 2이상의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있는 때에는 區·市·郡 單位로 不在者投票所를 共同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으며,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管轄區域안의 不在者投票豫想者의 數와 分布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不在者投票期間중 不在者投

票豫想者가 投票를 마칠 수 있는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에도 不在者投票所를 設置·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在者投票所를 設置하는 때에는 選擧日전 18日까지 그 名稱·所在地 및 設置期間을 公告하고, 管轄區域안의 投票區마다 5個所에 公告文을 貼付하며 당해 開票區의 選擧連絡所長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不在者投票所의 設置場所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第1項의 不在者投票所에는 記票所·投票函·選擧管理委員會委員 및 參觀人의 座席 기타 投票管理에 필요한 施設을 設備하여야 한다.

④不在者投票所의 投票管理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가 不在者投票所마다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 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중 政黨推薦委員을 모두 포함하여(政黨推薦委員이 참여를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한 3人이상의 委員(이하 "不在者投票管理委員"이라 한다)이 행한다. ⑤不在者投票所를 設置한 選擧管理委員會는 不在者投票事務를 補助하기 위하여 關係行政機關의 公務員 또는 敎員중에서 不在者投票事務從事員을 둔다. ⑥第95條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은 第1項의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⑦第1項의 不在者投票所의 設置·公告 및 통보, 不在者投票事務從事員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新 設)	第95條의 3(機關·施設內의 不在者投票所) ①不在者投票期間중 계속하여 第95條의 2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所에 가서 投票할 수 없는 第17條第2項第3號의 不在者申告人이 소속한 機關 또는 施設(船舶을 제외한다)의 長은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당해 機關 또는 施設에 不在者投票所를 設置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關 또는 施設의 長이 不在者投票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不在者申告人數·사유·所在地등을 명시하여 選擧日 전 20日까지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許可를 申請하여야 하며,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機關 또는 施設의 長과 協議하여 不在者投票日時와 場所를 정하여 이를 許可하고 당해 開票區의 選擧連絡所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所의 投票管理는 第95條의 2第4項의 規定에 準하여 지정한 不在者投票管理委員이 出張하여 행한다.

④第95條第5項·第6項 및 第95條의 2第3項·第5項의 規定은 第1項의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⑤第1項의 不在者投票所設置의 申請·許可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96條(投票時間) ①(생략)	第96條(投票時間) ①(現行과 같음)
(新 設)	②第95條의 2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所는 不在者投票期間중 매일 上午 9時에 열고 下午 4時에 닫는다. 第1項 但書의 規定은 不在者投票所의 경우에도 같다.
②投票를 開始하는 때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은 投票函 및 記票所 내외의 異常有無에 관하여 檢査하여야 하며 이에는 投票參觀人이 이 관여하여야 한다. 다만, 投票開始時刻까지 投票參觀人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의 選擧人으로 하여금 관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異狀有無----------
(新 設)	④第95條의 2 및 第95條의3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所의 投票를 開始하는 때에는 不在者投票管理委員은 投票函 및 記票所내외의 異狀有無에 관하여 檢査하여야 하며 이에는 不在者投票參觀人이 관여하여야 한다. 다만, 不在者投票開始時刻까지 不在者投票參觀人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投票하려온 不在者申告人으로 하여금 관여하게 하

	여야 한다.
③(생략)	⑤(現行 第3項과 같음)
第98條(投票用紙와 投票函의 작성)	第98條(投票用紙와 投票函의 작성)
①~②(생략)	①~②(現行과 같음)
③郵便投票函은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不在者投票所의 投票函(이하 "不在者投票函"이라 한다)과 郵便으로 접수한 投票를 보관하는 投票函(이하 "郵便投票函"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數는 不在者申告人數를 감안하여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정한다.
④~⑤(생략)	④~⑤(現行과 같음)
(新 設)	⑥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視覺障碍로 인하여 자신이 標를 할 수 없는 選擧人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殊投票用紙 또는 投票補助用具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第100條(投票通知票의 교부) ①~④ (생략)	第100條(投票通知票의 교부) ①~④ (現行과 같음)
⑤區·市·邑·面의 長과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通知票를 교부할 때에 政黨·候補者 또는 選擧事	⑤----------選擧事

務所나 連絡所의 責任者가 지명하는 者(이하 "投票通知票交付立會人"이라 한다)를 1人씩 立會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投票通知票交付立會人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務長이나 選擧連絡所長이----------
⑥~⑦(생략)	⑥~⑦(現行과 같음)
(新 設)	⑧投票通知票와 受領證의 작성은 電算組織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性別 및 生年月日의 기재는 住民登錄番號의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第101條(投票用紙受領) ①(생략)	第101條(投票用紙受領) ①(現行과 같음)
②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로부터 송부된 投票用紙를 封緘하여 보관하였다가 選擧日에 選擧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錄마감일 現在 國會의 多數議席順에 의한 第1黨과 第2黨이 지정하는 政黨推薦委員 各 1人으로 하여금 投票開始時刻전까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時間에 投票用紙에	②----------교부하는 때에는 100枚이내의 범위안에서 私印이 미리 捺印된 投票用紙를 그때마다 교부하여야 한다.-----第1黨·第2黨 및 第3黨이 추천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加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政黨에서 지정하는 委員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加印을 거부하는 委員이 있을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投票錄에 기재하여야 한다.	---------- 당해 政黨推薦委員이 없거나----------
③~④(생략)	③~④(現行과 같음)
⑤郵便投票의 投票用紙는 選擧日전 16日 上午 9時부터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서 政黨·候補者 또는 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가 지명하는 者의 參席下에 投票用紙의 一連番號를 切取한 후 投票用紙를 封套에 넣어 回送用外封套에 넣고 다시 發送用外封套에 넣어 封緘한 후 2日안에 發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명된 者가 그 時刻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參觀을 포기한 것 것으로 본다.	⑤---------- 15日---------- ----------·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이------- ----------
(新 設)	⑥政黨·候補者·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이 第50條의 3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小型印刷物을 郵便投票用紙와 함께 송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區·市·郡의 不在者申告人

	名簿에 登載된 者의 數에 상당하는 枚數의 傳單型 小型印刷物을 選擧日 전 16日 上午9時까지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하며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그 小型印刷物과 投票節次 기타 選擧에 관한 啓導文을 郵便投票用紙와 同封하여 發送하여야 한다. 이 경우 選擧日전 16日 上午9時까지 傳單型 小型印刷物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發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郵便投票의 發送과 回送은 無料登記郵便으로 한다.	⑦郵便投票用紙----------登記郵便으로 하되, 그 料金은 國庫에서 부담한다.
(新 設)	⑧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投票用紙의 封緘 및 보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02條(投票의 制限) ①選擧人名簿에 登載되지 아니한 者는 投票할 수 없다. 다만, 第20條第2項 또는 第21條第2項의 決定書를 持參한 者는 投票할 수 있다.	第102條(投票의 制限) ①----------·第21條第2項 또는 第21條의 2의----------
② ~ ③(생략)	② ~ ③(現行과 같음)

第103條(記票節次) ①(생략)	第103條(記票節次) ①(現行과 같음)
(新 設)	②不在者申告人(居所投票者를 제외한다)은 不在者投票期間중 不在者投票所에 가서 不在者投票管理委員과 不在者投票參觀人 앞에서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로부터 송부받은 發送用外封套 및 投票用紙와 住民登錄證 기타 官公署·公共機關이 발행한 寫眞이 貼付된 本人임을 확인할 수 있는 證明書를 제시하고 本人임을 확인 받은 후 記票所에서 投票用紙에 候補者가 기재된 欄중 하나를 選擇하는 標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內封套에 넣어 封緘한 다음 內封套를 回送用外封套에 넣어 封緘하고 그 外封套에 居所·姓名을 기재한 후 不在者投票管理委員 앞에 가서 不在者投票所에서 投票한 것임을 확인하는 確認印을 回送用外封套 封緘部分의 上·中·下 3個所에 각각 捺印받아 不在者投票管理委員과 不在者投票參觀人의 앞에서 不在者投票函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不

	在者投票所에서 投票하기 전에 候補者를 選擇하는 標를 미리 한 投票紙는 無效로 하며 本人임을 확인할 수 있는 證明書를 제시하지 아니한 不在者申告人에게 投票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新 設)	③不在者投票管理委員은 不在者投票期間중 매일의 不在者投票마감후 또는 2回(上午 12時와 下午 4時)에 걸쳐서 不在者投票參觀人의 참여하에 不在者投票函을 開函한 후 確認印의 漏落여부를 확인하여 確認印이 漏落된 것은 이를 補完·捺印하고 不在者投票數를 計算하여 郵遞局長에게 引繼하여 登記郵便으로 發送하여야 한다.
(新 設)	④居所投票者는 居所에서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로부터 송부받은 投票用紙에 候補者가 기재된 欄중 하나를 選擇하는 標를 한 후 內封套에 넣어 封緘한 다음 內封套를 回送用外封套에 넣어 封緘하고 그 外封套에 居所·姓名을 기재한 후 本人의 私印을 回送用外封套 封

	緘部分의 上·中·下 3個所에 捺印(拇印 또는 署名을 제외한다)하여 登記郵便으로 發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⑤(現行 第2項과 같음.)
③盲人 기타 身體의 不具로 인하여 자신이 標를 할 수 없는 選擧人은 그 家族 또는 本人이 지정한 사람 2人을 同伴하여 投票를 補助하게 할 수 있다.	⑥視覺障碍----------
④第3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同一 記票所안에 2人이상이 동시에 들어 갈 수 없다.	⑦第6項의----------
(新 設)	⑧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印의 規格·捺印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規則으로 정한다.
⑤第17條第2項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第10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郵便投票를 하는 者가 소속하는 機關 또는 施設의 長은 郵便投標를 하는 者가 投票用紙에 記票를 하고 郵便投票用封套를 封緘할 수 있도록 營內·艦艇·病院·療養所·收容所·矯導所 및 船舶안에	(削 除)

記票所를 設置하고 이를 즉시 告示하여야 한다. 이 경우 記票所는 第95條第5項의 規定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郵便投票用記票所의 設置對象과 基準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削 除)
第104條(記票方法) 選擧人이 投票用紙에 標를 하는 때에는 "○"標를 하여야 한다.	第104條(記票方法)----------"ⓧ"標----------
(但書 新設)	다만, 居所投票者가 居所投票를 하는 때에는 "○"標를 할 수 있다.
第106條(投票參觀) ①(생략)	第106條(投票參觀) ①(現行과 같음)
②政黨·候補者·選擧事務長 또는 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는 投票參觀人의 姓名·住所등을 選擧日 전 3日부터 投票開始전 30分까지 당해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하되, 選擧日에 있어서는 投票所에서 申告 할 수 있다. 다만, 投票參觀人의 變更과 그 申告는 언제든지 이를 할 수 있다.	②---------- 選擧連絡所長은 ----------
(新 設)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投票參觀人의 申告가 없거나 申告한 人員數가

	6人에 미달하는 때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가 選擧權者중에서 本人의 승낙을 받아 6人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者를 投票參觀人으로 한다.
(新 設)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가 선정한 投票參觀人은 정당한 이유없이 參觀을 거부하거나 그 職을 辭任할 수 없다.
③(생략)	⑤(現行 第3項과 같음)
④(생략)	⑥(現行 第4項과 같음)
⑤(생략)	⑦(現行 第5項과 같음)
⑥(생략)	⑧(現行 第6項과 같음)
⑦(생략)	⑨(現行 第7項과 같음)
(新 設)	⑩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에서 선정한 投票參觀人의 手當등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庫에서 부담한다.
(新 設)	第106條의 2(不在者投票參觀) ①不在者投票所를 設置·운영하는 選擧管理委員會는 不在者投票參觀人으로 하여금 不在者投票狀況을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不在者投票參觀人은 政黨

	·候補者·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이 選擧權者중에서 不在者投票所마다 2人을 선정하여 選擧日전 15日까지(第95條의 3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所의 不在者投票參觀人은 그 不在者投票所의 投票日전 2日까지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하되, 申告후 언제든지 交替할 수 있으며 不在者投票期間중에는 不在者投票所에서 交替申告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參觀人의 선정이 없거나 한 候補者가 선정한 不在者投票參觀人밖에 없는 때에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가 選擧權者중에서 本人의 승낙을 받아 4人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者를 不在者投票參觀人으로 한다. ④第106條第4項·第5項 및 第7項 내지 第10項의 規定은 不在者投票參觀人에 이를 準用한다.
第107條(投票所의 出入制限) ①(생략)	第107條(投票所등의 出入制限) ①(現

	行과 같음)
②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投票事務從事員 및 投票參觀人이 投票所에 出入하는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職責 및 姓名을 표시한 記章을 가슴에 附着하여야 한다.	②----------附着하여야 하며, 이 規定에 의한 附着物 이외는 選擧와 관련한 어떠한 表示物도 附着할 수 없다.
(新 設)	③第2項의 附着物은 다른 사람에게 讓渡·讓與할 수 없다.
(新 設)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第108條(檢事등의 投票所出入禁止와 秩序維持) ① (생략)	第108條(檢事등의 投票所등 出入禁止와 秩序維持) ①(현행과 같음)
②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그 委員會의 決議에 의하여 投票所의 秩序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投票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投票所의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正服을 한 警察公務員의 援助를 요구할 수 있다.	②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나 委員 및 職員은----------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에게----------
(新 設)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援助要求를

	받은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요구에 의하여 投票所안에 들어간 警察公務員은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의 指示를 받아야 하며 秩序가 回復되거나 委員長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投票所안에서 退去하여야 한다.	④----------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新 設)	
第109條(武器나 凶器등의 휴대금지) 第108條第2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投票所안에서 武器나 凶器 또는 爆發物을 휴대할 수 없다.	第109條(武器나 凶器등의 휴대금지) ①---------- ②第1項의 規定은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新 設)	
第110條(投票所內外에서의 騷亂言動禁止) ①投票所안에서 또는 投票所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騷亂한 言動을 하는 者가 있는 때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이를 制止하고, 그 命令에 불응하는 때에는 投票所 또는 그 制限距離 밖으로 退去하게 할 수 있다.	第110條(投票所內外에서의 騷亂言動금지등) ①----------騷亂한 言動을 하거나 특정 候補者를 支持 또는 反對하는 言動을 하는 者가 있는 때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나 委員 및 職員은----------

②(생략) ③누구든지 選擧日에 腕章·胸章등의 着用 기타의 방법으로 選擧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標識를 할 수 없다. (但書 新設)	②(現行과 같음) ③---------- 다만, 第10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記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新 設)	
第111條(投票의 秘密保障) ①~②(생략) (新 設)	第111條(投票의 秘密保障) ①~②(現行과 같음) ③選擧人은 자신이 記票한 投票紙의 내용을 公開할 수 없으며, 公開한 投票紙는 無效로 한다.
第115條(投票關係書類등의 引繼와 보관) ①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가 끝난 후,選擧人名簿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書類는 그 當選人의 任期中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第115條(投票關係書類의 引繼) ①----------投票---------- (削 除)
第116條(開票管理) ①~④(생략)	第116條(開票管理) ①~④(現行과 같음)

⑤開票事務從事員은 당해 區域안의 關係行政機關이나 法院의 公務員 또는 教育公務員중에서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위촉하되, 選擧日전 3日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關係行政機關의 公務員은 開票事務從事員總數의 3分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法院의 公務員과 教育公務員만으로 開票事務從事員總數의 3分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당해 區域을 관할하는 ---------- 教員과 銀行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第2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職員중에서 ---------- ----------教員 및 金融機關의 職員만으로 ----------

第117條(開票開始) ①(생략)

第117條(開票開始) ①(現行과 같음)

②開票參觀人은 投票函이 到着된 때에는 그 封鎖·封印을 檢査하고 管理狀況을 參觀할 수 있다.

②----------投票區에서 송부된 投票函의 引受·引繼節次를 參觀하고 投票函의 封鎖·封印을 檢査하며 그 管理狀況을----------

③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郵便投票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不在者用投票函에 投入·보관하여야 하며, 그 投票函은 選擧日 下午 6時부터 候補者·選擧事務長 또는 開票參觀人의 參與下에 本人이 發送한 여부를 확인한 후 外封套를 開封하여 一般投票函의 投票紙와 混合하여

③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郵便投票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政黨推薦委員의 參與下에 回送用外封套의 確認印 또는 居所投票者의 私印捺印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즉시 郵便投票函에 投入·보관하여야 하며, 郵便投票函은 開票參觀人 參與下에 選擧日 下

開票한다.	午 6時이후에 開票場所로 移送한 후 回送用外封套를 開封하여 一般投票函의 投票紙와 混合하여 開票한다.
第118條(投票函의 開函) ①~③(생략)	第118條(投票函의 開函) ①~③(現行과 같음)
④候補者別 得票數의 발표는 投票區單位로 행하되 출석한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은 발표전에 得票數를 檢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開票事務를 遲延시키는 委員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開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候補者別 得票數의 발표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投票區별로 작성·集計된 開票狀況表에 의하여 投票區 單位로 하되, 출석한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은 발표전에 得票數를 檢閱하고 開表狀況表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
(新 設)	⑤누구든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別得票數의 발표전에는 이를 報道할 수 없다.
第119條(開票參觀) ①(생략)	第119條(開票參觀) ①(現行과 같음)
②第1項의 開票參觀人은 候補者마다 8人으로 하되 選擧日전 3日부터 開票前後를 불문하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하고 4人씩 交代	②第1項의 開票參觀人은 候補者마다 8人을 선정하여 選擧日전 3日부터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하여 參觀하게 하되, 申告후

하여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開票參觀人의 變更과 그 申告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언제든지 交替할 수 있으며 開票日에는 開票所에서 交替申告할 수 있다.
(新 設)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開票參觀人의 申告가 없거나 한 候補者가 선정한 開票參觀人 밖에 없는 때에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選擧權者중에서 本人의 승낙을 받아 8人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者를 開票參觀人으로 한다.
(新 設)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선정한 開票參觀人은 정당한 이유없이 參觀을 거부하거나 그 職을 辭任할 수 없다.
③(생략)	⑤(現行 第3項과 같음)
④(생략)	⑥(現行 第4項과 같음)
⑤(생략)	⑦(現行 第5項과 같음)
⑥候補者 또는 開票參觀人은 開票所안에서 開票狀況를 촬영할 수 있다.	⑧----------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開票所안 또는 一般觀覽人席에 지정한 場所에 電話·컴퓨터 기타의 通信施設을 設置하고 이를 이용하여 開票狀況을 候補者 또는 政

	黨에 통보할 수 있다.
⑦(생략)	⑨(現行 第7項과 같음)
⑧第7項의 觀覽證의 枚數는 開票場所를 참작하여 적당한 數로 하되 候補者別로 균등하게 配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⑩第9項----------
⑨(생략)	⑪(現行 第9項과 같음)
(新 設)	⑫開票參觀人의 手當등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庫에서 부담한다.
第120條(開票所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 ①~②(생략)	第120條(開票所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 ①~②(現行과 같음)
③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그 委員會의 決議에 의하여 開票所의 秩序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③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나 委員은 ----------

開票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開票所의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正服을 한 警察公務員의 援助를 요구할 수 있다.	----------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에게 ---------- .
(新 設)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援助要求를 받은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요구에 의하여 開票所안에 들어간 警察公務員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의 指示를 받아야 하며 秩序가 回復되거나 委員長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開票所에서 退去하여야 한다.	⑤----------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 ---------- .
⑤(생략)	⑥(現行 第5項과 같음)
第121條(無效投票)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投票는 無效로 한다.	第121條(無效投票) ①---------- .
1.~4.(생략)	1.~4.(現行과 같음)
5. ○標를 하지 아니하고 文字 또는 物形을 記入한 것	5. ㉦標---------- .
6. ○標 이외에 다른 사항을 記入한 것	6. ㉦標외에 다른 사항을 記入하거나 候補者欄외에 ㉦票를 追加한 것
7. 郵便投票의 경우 封緘되지 아니한 것	7. 郵便投票의 경우 內封套 또는 回送用外封套가 封緘되지 아니한

	것
8. 郵便投票의 경우 選擧人이 本人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	8. 郵便投票의 경우 回送用外封套의 封緘部分에 確認印 또는 居所投票者의 私印捺印이 漏落된 것
(新 設)	9. 不在者投票所에서 한 郵便投票의 경우 選擧管理委員會의 記票用具외의 用具에 의하여 記票된 것
(新 設)	10. 郵便投票의 경우 不在者投票所에서 投票하기로 申告한 者가 居所投票의 방법으로 投票하거나 居所投票者가 不在者投票所에서 投票한 것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投票는 無效로 하지 아니한다.	②----------.
1. ○標가 一部分 표시되거나 ○標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당해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記票用具를 사용하여 記票한 것이 명확한 것	1. ⊗標가 ---------- ⊗標안이 ---------- 選擧管理委員會의 記票用具 ----------
2.~6.(생략)	2.~6.(現行과 같음)
(新 設)	7. 居所投票의 경우 選擧管理委員會의 記票用具외의 用具에 의하여 記票되거나 ⊗標외의 ○標로 記票한 것
第125條(投票紙·選擧錄·開票錄등의	第125條(投票紙·選擧錄·開票錄등의

보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紙·投票錄·投票函·開票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集計錄과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錄과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그 當選人의 任期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 ----------.
(但書 新設)	다만, 第134條 및 第135條의 規定에 의한 選擧에 관한 訴訟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係屬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保存期間을 단축할 수 있다.
第130條(再選擧) ①(생략)	第130條(再選擧) ①(現行과 같음)
②再選擧는 第1項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日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選擧日은 選擧日전 30日에 大統領이 公告한다.	②---------- 날부터---------- 28日----------.
第132條(一部再選擧) ①(생략)	第132條(一部再選擧) ①(現行과 같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部再選擧는 確定判決의 통지를 받은 후 20日이내에 실시하되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日전 12日에 그 再選擧日	②---------- 15日까지 ---------

을 公告하여야 한다.	----------.
③(생략)	③(現行과 같음)
④一部再選擧를 실시함에 있어 政黨이 合黨한 경우 合黨된 政黨은 一部再選擧日이 公告된 날로부터 5日이내에 合黨전 候補者중에서 1人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추천하여야 한다.	④----------날부터 3日----------.
⑤~⑧(생략)	⑤~⑧(現行과 같음)
第133條(天災·地變등으로 인한 再投票) ①(생략)	第133條(天災·地變등으로 인한 再投票) ①(現行과 같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投票(이하 "一部再投票"라 한다)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20日이내에 실시하되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日전 12日에 그 再投票日을 公告하여야 한다.	②----------날부터---------- 15日까지 ----------.
③一部再投票를 실시함에 있어 政黨이 合黨한 경우 合黨된 政黨은 一部再投票日이 公告된 날로부터 5日이내에 合黨전 候補者중에서 1人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날부터 3日----------.
④~⑦(생략)	④~⑦(現行과 같음)

第137條(訴訟의 처리) 選擧에 관한 訴訟은 다른 訴訟에 우선하여 신속히 裁判하여야 하며 訴訟이 제기된 날로부터 1年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第137條(訴訟의 처리) ---------- ---날부터 180日----------.
(新 設)	第138條의 2(印紙貼付에 관한 特例) 選擧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는 民事訴訟등印紙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訴訟書類에 貼付하여야 할 印紙는 民事訴訟등印紙法에 規定된 額의 10倍로 한다.
第140條(詐僞登載·虛僞捺印罪) ①詐僞의 방법으로 選擧人名簿에 登載되게 한 者 또는 第101條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捺印 또는 拇印을 한 者는 6月아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選擧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또는 選擧人名簿作成에 관계있는 者가 選擧人名簿에 故意로 選擧權者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40條(詐僞登載·虛僞捺印罪) ①---------- 選擧人名簿(不在者申告人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 1年이하의 ---------- 100萬원----------. ②---------- ---------- ---------- ---------- ---------- --------- 3年 ---------- ------ 300萬원----------.
第141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다음	第141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300萬원----------.
1. 當選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選擧人 또는 다른 政黨이나 候補者의 選擧事務長·會計責任者·演說員·參觀人·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 또는 選擧事務員에게 金錢·物品·車馬·饗應 기타 財産上의 이익이나 公私의 職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意思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約束한 者	1. ---------- 選擧連絡所長·會計責任者·選擧運動員·演說員 또는 參觀人 ----------
2. 投票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알선·勸誘에 대한 報酬를 目的으로 選擧人 또는 다른 政黨이나 候補者의 選擧事務長·會計責任者·演說員·參觀人·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 또는 選擧事務員에게 第1號에 規定된 행위를 한 者	2. ----------選擧連絡所長·會計責任者·選擧運動員·演說員 또는 參觀人----------
3~4(생략)	3.~4.(現行과 같음)
5. 第1號 내지 第4號에 規定된 행위	(削 除)

에 관하여 알선 또는 勸誘한 者	
6. 第1號 내지 第3號에 規定된 이익 또는 職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의 意思表示를 승낙한 者	6. ---------- 제공의 ----------
(新 設)	②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勸誘하거나 요구 또는 알선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그 選擧事務에 관계 있는 公務員이나 警察公務員이 第1項의 행위를 한 때에는 4年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③---------- 第1項 各號 또는 第2項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5年----------.
第142條(多數人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萬원이상 2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42條(多數人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財産上의 이익을 도모할 目的으로 政黨 또는 候補者를 위하여 多數의 選擧人·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會計責任者·選擧運動員·演說員 또는 參觀人에 대하여 第141條第1項 各號의 행위를 한 者는 6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00萬원이상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財産上의 이익을 도모할 目的으로 政黨 또는 候補者를 위하여 多數의 選擧人·選擧事務長·會計責任者·演說員·參觀人·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 또는 選擧事務	

員에 대하여 第141條第1項 各號에 게기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者 2. 第1號에 規定된 행위를 할 것을 請託받거나 請託받게 한 者	②第1項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勸誘하거나 요구 또는 알선한 者는 6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이상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43條(候補者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萬원이상 2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2.(생략) 3. 第1號 또는 第2號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勸誘를 한 者 ②第1項第1號 내지 第2號에 規定된 이익 또는 職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意思表示를 승낙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新 設)	第143條(候補者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 200萬원이상 500萬원이하의 ----------. 1.~2.(現行과 같음) (削 除) 4. ---------- 그 제공의 ----------者 ②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勸誘하거나 요구 또는 알선한 者는 6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	③----------

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이나 警察公務員이 당해 選擧에 관하여 第1項의 행위를 한 때에는 6年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 第1項 各號 또는 第2項에 規定된 ----------.
第144條(當選人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상 7年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144條(當選人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
1. (생략)	1. (現行과 같음)
2. 第1號에 規定된 이익 또는 職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意思表示를 승낙한 者	2. ---------- 그 제공의 ----------
②第1項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勸誘를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萬원이상 2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勸誘하거나 요구 또는 알선한 ---------- 200萬원이상 500萬원----------.
第145條(新聞·雜誌등 不法利用罪) 第55條·第57條 및 第5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45條(新聞·雜誌등 不法利用罪) ---------- 300萬원----------.
第147條(選擧의 自由妨害罪) ①選擧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第147條(選擧의 自由妨害罪) ①---------- 6年----------

50萬원이상 2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300萬원이상 600萬원---------- ------.
1. 選擧人·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選擧事務長·會計責任者·選擧事務所와 連絡所의 責任者·選擧事務員·演說員·參觀人·選擧事務從事員(投票·開票事務從事員을 포함한다) 또는 當選人을 脅迫·暴行 또는 誘引하거나 不法으로 逮捕 또는 監禁한 者	1. ----------選擧連絡所長·會計責任者·選擧運動員-- ---------- ---------- ---------- ---------- ----------
2. (생략)	2. (現行과 같음)
(新 設)	3. 業務·雇傭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指揮·監督下에 있는 者에게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를 支持·추천하거나 反對하도록 強要하여 選擧의 自由를 방해한 者
②(생략)	②(現行과 같음)
(新 設)	③이 法에 規定된 演說會場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候補者 또는 演說員을 暴行한 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處罰한다.
	1. 主謀者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禁錮
	2. 다른 사람을 指揮하거나 다른 사

	람에 率先하여 행동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禁錮 3. 附和하여 행동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
(新 設)	④第1項 또는 第3項의 罪를 犯한 경우에 그 휴대한 물건은 이를 沒收한다.
第149條(職權濫用에 의한 選擧의 自由妨害罪) 選擧에 관하여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選擧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또는 選擧人名簿 작성에 관계있는 者나 警察公務員이 職權을 濫用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49條(職權濫用에 의한 選擧의 自由妨害罪) ---------- 6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1.~3. (생략)	1.~3. (現行과 같음)
第150條(壁報 기타 宣傳施設 등에 대한 妨害罪) ①정당한 이유없이 壁報·懸垂幕 기타 宣傳施設의 작성·게시·貼付 또는 設置를 방해하거나 이를 毁損·撤去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50條(壁報 기타 宣傳施設 등에 대한 妨害罪) ①----------200萬원----------

②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그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이나 警察公務員이 第1項의 행위를 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300萬원----------
③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그 選擧事務에 종사하는 者가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壁報를 부정·부당하게 작성·貼付 또는 配付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300萬원----------
第151條(投票의 秘密侵害罪) ①投票의 秘密을 侵害하거나 選擧人에 대하여 그 投票하고자 하는 政黨이나 候補者 또는 投票한 政黨이나 候補者의 표시를 요구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51條(投票의 秘密侵害罪) ①----------3年----------300萬원----------
②(생략)	②(現行과 같음)
第152條(投票·開票의 干涉罪) ①投票所나 開票所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投票나 開票에 간섭한 者 또는 投票	第152條(投票·開票의 干涉罪) ①投票를 방해하기 위하여 住民登錄證(第103條第2項의 本人임을 확인할 수

를 勸誘하거나 기타 投票 또는 開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있는 證明書를 포함한다)을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者 또는 投票所(不在者投票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投票所에서의 投票公開등 기타----------
②(생략)	②(現行과 같음)
第154條(選擧事務關係者나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을 暴行·脅迫하거나, 投票所 또는 開票所를 攪亂하거나, 投票用紙·投票紙·選擧人名簿 기타 選擧에 관한 書類 또는 選擧에 관한 印章을 抑留·훼손 또는 奪取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萬원이상 3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54條(選擧事務關係者나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300萬원이상 700萬원----------
第155條(投票所·開票所濫入罪)	第155條(投票所 등에의 濫入罪)
①(생략)	①(現行과 같음)
②第107條第1項 또는 第12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300萬원----------

하의 罰金에 處한다.	----------
②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그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이나 從事員이 第1項의 罪를 犯하거나 犯하게 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5年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에--------
(新 設)	第158條의2(參觀人의 義務懈怠罪) 第106條第3項·第106條의 2第3項 또는 第1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管理委員會가 선정한 參觀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參觀을 거부하거나 懈怠한 때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59條(虛僞事實公表罪) ①演說·新聞·雜誌·放送·壁報·宣傳文書 기타 어떠한 방법을 불문하고 當選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他人의 소속·思想·身分·職業 또는 經歷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者 또는 사실을 歪曲하여 공표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第159條(虛僞事實公表罪) ①--------自己 또는 다른 사람의 소속·思想·행위·身分·職業 또는 經歷등 모든 사항에 ----------6年----------

第156條(多數人의 選擧妨害罪) ①多數人이 集合하여 第153條 내지 第155條의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處罰한다.	第156條(多數人의 選擧妨害罪) ①----------다음 各號의----------
1.(생략)	1.(現行과 같음)
2. 他人을 指揮하거나 他人에 率先하여 행위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	2. 다른 사람--------다른 사람----------
3. 附和하여 行動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萬원이하의 罰金	3. ----------3年----------300萬원----------
②第153條 내지 第155條의 행위를 할 目的으로 多數人이 集合한 때에 關係 公務員으로부터 3回이상의 解散命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解散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主導的 行爲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하고, 기타의 者는 6月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1年----------100萬원----------
第157條(詐僞投票罪) ①姓名을 詐稱하거나 기타 詐僞의 방법으로 投票하거나 投票를 하려고 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00萬원이	第157條(詐僞投票罪) ①----------3年----------300萬원--

2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300萬원이상 600萬원----------
②選擧日公告日로부터 選擧日까지의 사이에 選擧權者를 誤信케 하기 위하여 僞計·詐術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②----------6年----------
第160條(候補者誹謗罪) ①演說·新聞·雜誌·放送·壁報·宣傳文書 기타 어떠한 방법을 불문하고 當選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公然히 사실을 摘示하여 候補者를 誹謗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60條(候補者誹謗罪) ①----------300萬원----------
②(생략)	②(現行과 같음)
第161條(放送등 不正利用罪) 第45條·第59條 또는 第7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61條(放送등 不正利用罪) ----------300萬원----------
(新 設)	第161條의 2(姓名등의 虛僞表示罪) 當選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眞實에 반하여 姓名·名稱 또는 身分의 표시를 하여 郵便·電報 또는 電話등에 의한 通信을

	한 者는 4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4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62條(事前運動·特殊地位利用·戶別訪問등 不正選擧運動罪)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62條(事前運動·特殊地位利用·戶別訪問등 不正選擧運動罪) ①----------300萬원----------
1. 第34條 내지 第39條, 第40條第2項·第4項·第5項·第7項 또는 第6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運動을 한 者	1. 第34條 내지 第37條第1項, 第40條第2項 및 第7項, 第49條, 第56條, 第60條, 第61條의 3, 第61條의 4, 第63條, 第64條, 第67條, 第67條의 3, 第67條의 4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49條, 第63條 내지 第66條 또는 第6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運動을 한 者	2. 第38條, 第39條第1項, 第40條第5項, 第47條第4項 또는 第6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運動을 한 者
②公務員이 그 地位를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하는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懲役 또는 禁錮에--------
第163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00萬원이하	第163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200萬원----

의 罰金에 處한다.	----------
1. 第42條 또는 第47條第11項·第12項에 規定된 이외의 文書·圖畫 기타 宣傳施設을 選擧運動을 위하여 작성·사용한 者	1. 第37條第2項, 第42條, 第47條第11項 내지 第13項, 第50條, 第50條의 2, 第50條의 3, 第51條 또는 第53條第4項에 規定된 이외의 文書·圖畫 기타 宣傳施設을 選擧運動을 위하여 작성·사용한 者
2. 第52條·第56條·第61條·第62條·第67條·第73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47條第7項 및 第8項, 第51條의 2, 第52條第1項, 第52條의 2, 第53條第1項·第3項 및 第5項, 第61條, 第61條의 2, 第62條, 第65條, 第67條의 2 또는 第7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47條第3項·第5項 내지 第7項·第10項, 第50條, 第51條 또는 第5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運動을 한 者	3. 第4條, 第18條第8項, 第26條第2項, 第100條第6項, 第106條第7項(不在者投票參觀人을 포함한다), 第107條第2項 내지 第4項, 第108條第1項·第3項 및 第5項, 第110條第3項 및 第4項 또는 第120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新 設)	4. 第1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不應한 者
②(생략)	②(現行과 같음)

第164條(寄附行爲의 禁止制限등 違反罪) ①第70條第1項 또는 第2項에 規定된 者가 同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寄附를 하거나 第7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72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상 7年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이 경우 250萬원이하의 罰金을 併科할 수 있다. ③第7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64條(寄附行爲의 禁止制限등 違反罪) ①----------300萬원--- ②----------6年----------600萬원---------- (削 除)
第165條(選擧費用不正支出등 罪) ①政黨·候補者·選擧事務長·會計責任者 또는 會計補助員이 第8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費用을 支出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政黨·候補者 또는 會計責任者가 第83條 내지 第89條 또는 第92條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候補者 또는 會	第165條(選擧費用不正支出등 罪) ①----------500萬원---------- ②----------

計責任者가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閱覽·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200萬원----------
第166條(各種制限違反罪) ①第140條 내지 第165條이외에 選擧에 관하여 이 法이 規定하는 各 制限規定에 위반한 者는 1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66條(各種制限違反罪) ①----------100萬원----------
②選擧에 관하여 이 法이 規定하는 申告義務를 懈怠한 者는 1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100萬원----------
(新 設)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新 設)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新 設)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

	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新 設)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管轄稅務署長에게 移牒하고 管轄稅務署長은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167條(選擧犯罪煽動罪) 演說·壁報 新聞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章에 規定한 罪를 犯할 것을 煽動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67條(選擧犯罪煽動罪) ---------- ---------- ---------- ---------- 300萬원----------
(新 設)	第167條의2(自首者에 대한 特例) 第141條第1項·第142條第1項 또는 第16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중 金錢·物品 기타 이익등을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約束받은 者(候補者와 그 家族·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會計責任者·選擧運動員·演說員·參觀人·政黨의 幹部 및

	詐僞의 방법으로 이익등을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한 者를 제외한다)가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免除한다.
第168條(當選人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 當選人이 당해 選擧에 있어서 이 法에 規定한 罪를 犯함으로 인하여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萬원 이상의 罰金刑에 處하게 된 때에는 그 當選은 無效로 한다.	第168條(當選人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 ----------150萬원 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은 ----------
第170條(公訴時效) 이 法에 規定한 罪의 公訴時效는 選擧日후 3月을 경과함으로써 完成한다. 다만, 犯人이 逃避한 때에는 그 期間을 1年으로 한다.	第170條(公訴時效) ----------6月----------3年----------
(新 設)	第171條의 2(選擧犯의 裁判期間) 選擧犯과 그 共犯에 관한 裁判은 다른 裁判에 우선하여 신속히 裁判하여야 하며, 裁判의 宣告는 第1審에서는 公訴가 제기된 날부터 6月이내에, 第2審 및 第3審에서는 前審의 判決의 宣告가 있은 날부터 각각 3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新 設)	第171條의3(不法施設物등에 대한 代執行) ①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이 法

	의 規定에 위반한 壁報, 政見·政策集, 小型印刷物, 懸垂幕 기타 宣傳物이나 類似機關 또는 施設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貼付등의 중지 또는 撤去·收去·閉鎖등을 命할 수 있으며, 이에 不應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에 의한 代執行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代執行에 따른 費用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6條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寄託金중에서 控除하되 寄託金이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은 우선 國庫에서 支出한 후 行政代執行法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新 設)	第171條의4(不法宣傳物의 郵送中止)①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第159條 또는 第161條의 2의 規定에 해당하는 犯罪의 嫌疑가 있는 宣傳物이 郵送중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해 郵遞局長에게 郵送中止를 요청할 수 있다. ②郵遞局長이 第1項의 郵送中止 요

	청을 받은 때에는 그 郵便物의 郵送을 즉시 中止하고, 發送人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發送人의 住所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發送郵遞局 揭示板에 郵送中止의 사실을 公示하여야 한다. ③各級選擧管理委員會가 郵送中止를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搜査機關에 調査를 의뢰하거나 告發하고 해당 郵便物의 押收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경우 搜査機關은 刑事訴訟法 第207條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해당 郵便物에 대한 押收令狀의 발부여부를 해당 選擧管理委員會 및 郵遞局長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이 期間내에 押收令狀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郵遞局長은 즉시 그 郵便物의 郵送中止를 解除하여야 한다. ⑤郵遞局長이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요청에 의하여 郵便物의 郵送을 中止한 경우에는 郵便法 第50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72條(選擧에 관한 申告등의 時間) 이 法 또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한	第172條(選擧에 관한 申告등의 時間) ----------

大統領令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에 의하여 各級行政機關과 各級選擧管理委員會에 대하여 행하는 申告·申請·제출·보고등은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一般職國家公務員의 正規의 勤務時間중에 하여야 한다.	----------公休日에 불구하고 一般職國家公務員의 平日의 正規勤務時間중에 ---------.